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CONTENTS

I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개요 1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3
2.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보호받나요? 4
3. 사용자가 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6
4.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은? 6
5. 어디서 도움을 받나요? 7

II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어떻게 되어있나요? 9

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노동관계법률 규정 12
2.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법률 규정 23
3. 직장 내 괴롭힘 분쟁 발생 시 해결방법 26

III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31

1.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분석 33
2.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적용 57



IV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체계 59

1. 자율적 대응의 필요성 61
2.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내 규범 마련 63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활동 65

V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의 조치 73

1. 원 칙 75
2.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내 처리 담당체계 77
3. 사업장 내 조사·조치 절차별 고려사항 78

VI

참 고 97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예방을 위한 지원 99
2.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 및 유형별 사례 101
3.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사례 122
4. 「직장 내 성희롱」과의 비교 137
5. 사업장 자체 조직문화 진단을 위한 근무환경 설문조사표 ... 138
6.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표준안 141

I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개요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2.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보호받나요?
3. 사용자가 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4.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은?
5. 어디서 도움을 받나요?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괴롭힘 행위자

- **사용자:**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대표이사, 등기이사, 지배인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사노무담당이사, 공장장 등)
- **근로자:** (원칙) 피해자와 동일한 회사 소속 근로자
 - (예외)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괴롭힘 행위자·피해자인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사업주 책임이 있으므로, 이 경우 다른 회사 소속도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괴롭힘 피해자

- 피해근로자의 고용형태, 계약기간 등과 관계없이 적용

성립 요건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 우위성은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
 - (지위의 우위) 지휘명령 관계상 상위 또는 직위·직급상 상위 등
 - (관계의 우위) 인원수 우위, 연령·출신학교, 근속연수, 직장 내 영향력 등
 - (우위성 이용) 직장 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①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② 행위가 폭행·폭언 등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은 경우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근무환경 악화)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
- (신체적·정신적 고통) 참고 1, 2 판결 참조



참고·판례

참고 1 광주지방법원 2021. 8. 24. 선고 2020가단506023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9.21. 선고 2021가단5566 판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상사의 폭언, 모욕적인 언행 등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이로 인해 상대방이 다소 기분이 상한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감내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만한 행위**이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한 경우**에까지 이르러야 할 것이며,

참고 2 광주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20가합52585 판결

직장 내 괴롭힘의 결과라 할 수 있는 **정신적 고통**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으로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그 행위로 인해 고통을 느낄 수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보호받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 제1항: 누구든지 **사용자**에 신고
- 제2항: **사용자의 지체없는 객관적 조사** 실시 의무
- 제3항: **조사기간 중 사용자**의 **피해근로자등**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의무
- 제4항: 괴롭힘 확인 시 사용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의무
- 제5항: 괴롭힘 확인 시 사용자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의무
- 제6항: 사용자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 제7항: **비밀 누설** 금지

신고자(피해자가 아닌 자도 누구든지 신고 가능)

- (피신고자: 사용자)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음

사용자의 의무

- (객관적 조사)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 실시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조사기간 중 피해근로자등 보호) 피해자(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포함)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하면 안 됨)
- (피해자 보호)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가해자 징계 등)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조치 전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불리한 처우 금지)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비밀 누설 금지

- 조사자, 조사 내용 보고받은 자, 조사 과정 참여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해 누설 금지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다만, 사용자에게 보고, 관계 기관 요청에 따른 정보제공은 제외

3 사용자 조사하지 않거나 조치 의무 이행하지 않으면?

- 사용자의 객관적 조사 미 실시 및 조치 의무 미 이행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가능(방문·우편, 인터넷 접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으로 지역별 고용노동행정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상담 및 진정·고소사건 접수 및 조사·처리

4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은?

사용자의 괴롭힘

-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이 해당 사업·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포함

예방활동

- 최고경영자의 적극적 의지 표명·선언, 예방교육 실시, 위험요인 점검, 예방·대응조직 지속 운영, 캠페인·홍보 등

취업규칙

- 사용자(상시근로자 10명 이상)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신고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조사

- 신고 또는 인지(78p 참조)로 **사건이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아래의 절차대로 **객관적 조사 진행**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상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약식 조사' 또는 '정식 조사' 결정
 - **약식조사: 피해자가 행위자의 사과, 재발방지 약속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하고, 가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합의 도출·기초적인 사실관계 조사 후 조사 종결 가능
 - * 약식조사는 형식을 생략하거나 절차를 생략하기보다는 기초적인 사실관계 조사 의미를 내포하며 법령상 용어는 아님
 - **정식 조사: 피해자가 정식조사를 요청하면, 신속히 조사 방향·범위·대상 등을 결정, 조사기구 (조사자)에서 정식 조사(본조사) 진행**

조치

- 괴롭힘 조사 중 조치(①, ④, ⑤) 또는 확인 시 조치(②, ③, ④, ⑤)
 - ①**피해근로자등 보호 조치** ②**피해근로자 요청시 피해자 유급휴가 부여 등 적절조치** ③**가해자 근무장소 변경, 징계 등 필요조치** ④**불리한 처우 금지** ⑤**비밀누설 금지**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

어디서 도움을 받나요?

📍 법·제도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심리 상담	직업트라우마센터	☎ 1588-6497
	근로복지넷 EAP	☎ 02-2674-0329
📍 예방교육지원 상담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031-760-7772
📍 정신건강 위기 상담	정신건강 복지센터 상담전화	☎ 1577-0199

II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어떻게 되어있나요?

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노동관계법률 규정
2.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법률 규정
3. 직장 내 괴롭힘 분쟁 발생 시 해결방법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연혁

- 관계부처 합동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18.7.18.)
- '19.1.15.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법제화하였고, '19.7.16.부터 시행
 - 직장 내 괴롭힘 없는 업무 환경에서 안전하게 근무하고,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조치를 통한 조속한 회복을 목표로,
 - 직장 내 괴롭힘을 법에 정의·금지하고,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치를 규정하고 그에 따르도록 규정
- 사업주 등 사용자가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조치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우려에 따라, 이에 실효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21.10.14. 시행)
 - ① 사용자 및 사용자의 친족(시행령: 배우자·4촌 이내 혈족·인척)인 근로자가 괴롭힘을 한 경우 과태료 부과(법 제116조제1항)
 - ② (사용자 의무 강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에게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함(법 제76조의3제2항)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등에게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함(법 제76조의3제7항)
 - ③ (사용자 조치의무 위반 제재 신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행위자 징계 등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법 제116조제2항)



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노동관계법을 규정



-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업장 상황에 맞게 예방·대응 시스템을 마련하여 취업규칙에 정하도록 함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사·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을 규정
- 한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일부 특정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규정을 형법 등 개별법에 두고 있음

* 상해(형법 제257조), 폭행(형법 제260조, 근로기준법 제8조), 협박(형법 제283조),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모욕(형법 제311조), 강요(형법 제324조) 등

1

근로기준법

1. 직장 내 괴롭힘 정의 및 금지의무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1.10.14. 시행)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들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10.14. 시행)



잠깐

사용자 조치의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피해를 주장하는 단계(조사 중, 조사 前)의 근로자도 보호하여야 하나요?

- 조사 중으로 아직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조사 결과 괴롭힘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행위일지라도, 신고자등에 대한 **'2차피해'**는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호할 필요

2) '객관적인 조사'는 어떻게 도모할 수 있나요?

- 우선, **절차와 내용**과 관련하여 **객관성·공정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하고,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를 제시
 - 이를 위해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을 통해 조사 관련 절차나 의무 등을 규정하여 사전에 공지됨이 바람직
 - * (예시) 당사자와 이해관계 없는 조사자 선정, 당사자 진술 기회 보장, 핵심 참고인 확인, 제출자료 심도있는 검토 등

3) 사업장 여건상 피해근로자가 원하는 장소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 확인 시,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 가급적 피해근로자의 요청을 반영하여, 피해근로자의 상태 및 요청 취지, 당해 사업장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치 수준을 결정
- **사업장의 여건상 불가능한 보호조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근로자에게 충분히 상황과 사정을 설명하여 피해자의 이해를 구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다른 조치를 강구****할 필요
 - * 예: 근무장소가 하나인 사업장에서 장소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등
 - ** 예: 회의 주재자 변경, 출퇴근 시간 시차 적용 및 유연근무 활용 등



4) 조치의무에 있어서 '지체 없이'의 의미는?

- 법령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으나,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바가 있는 경우(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경우)에는 이를 따름
- 사내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으면, **관련 사내규정, 사회적 통념, 조사·조치에 있어 필요한 절차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한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



[참고] 법령 입안 심사 기준(법제처, 2026, p.797)

마. 즉시/지체없이

‘즉시’는 ‘어떤 일이 행하여지는 바로 그때’라는 뜻으로 시간적 즉시성이 좀 더 강한 것이다. 이에 비하여 ‘지체 없이’는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한다.



참고판례

대법원 2001.3.9. 선고 2000수124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 제4항, 제8항, 제10항, 제52조 제3항, 제55조의 각 규정에 의하니,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후보자와 그를 추천한 정당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고 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지체없이’라 함은 같은 법 제52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등록무효사유를 발견하고 이를 가능한 한 빨리 필요한 확인 등의 절차를 마친 후 즉시라는 뜻인바, **일률적으로 그 시간적인 한계를 그을 수 없고** 구체적인 등록무효 사유의 성격·내용과 정도, 객관적으로 발견 가능한 시기,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방법과 권한, 해당 후보자에 대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의 정도와 타당한 기간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부재자투표용지 발송 시작 전이나 적어도 부재자투표 시작 전까지 그러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이치이다.

5) 피해근로자가 반대하는 보호조치를 실행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 단서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76조의3제4항은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보호조치는 해서는 아니 됨**
- 특히, 보호조치를 빙자하여 피해근로자를 배제하는 조치(강제적 근무장소 변경이나 전보)는 제76조의3제6항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음

6) 비밀과 누설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 비밀은 **비공지성**(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사항)과 **보호필요성**(비밀로 지키고 유지할 이익이 있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판례는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을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해석(대법원 2005도 7309 등)
- 누설은 아직 비밀을 모르는 제3자에게 알리는 일체의 행위로서 알리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고 보아야 함
 - 비밀을 알지 못하는 제3자가 비밀이 기재된 서류를 열람하는 것을 묵인하는 등 부작위에 의한 경우도 누설로 볼 수 있을 것임

7) 비밀누설 금지 예외 중 사용자에 대한 조사 보고 관련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및 결과 보고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적절한 조치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사 및 조치 의무자인 **사용자에 대한 보고는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음**(예외 인정)
 - 다만,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피신고자에 해당하므로 조사 및 조치의무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제외하고, 조사결과 보고를 받는 대상자에서도 배제함이 바람직
 - * 조사·조치 과정에서의 문제가 또 다른 괴롭힘으로 비화되거나 장기화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으로 정비할 필요(참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2023.8.30. 선고 2022가단111536 판결)



참고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8. 선고 2022가단5320016 판결

〈 사용자의 조사의무의 내용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조사에 있어서 사용자가 조사가 성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조사 과정에 개입하거나 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신고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내역과 관련하여 조사권자가 이에 대한 조사의 범위, 조사의 방법을 결정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신고자가 생각하는 조사 방법이나 조사 범위와 다른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신고자인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부분 부실조사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참고판례

대전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2가합101407 판결

〈 객관적인 조사의무 위반 관련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인데(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피고 또는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고, (중략) 설령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비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절차 없이 막연히 근로계약의 만료를 앞둔 시점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통보를 하였는바, 이는 당시 원고가 가지고 있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조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참고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22가단5054715 판결

〈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근로자들의 보호의 의미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 3항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기간 동안 피해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병원은 2019. 6.경 피고 D의 폭언 등 괴롭힘에 대하여 수차례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2020. 4. 피고 D에 대하여 서면경고를 한 이후인 2020. 5. 1.에서야 원고들의 소속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는 바, 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서 정한 보호조치를 적절한 시기에 행하지 아니하여 위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2노884 판결

〈 ‘피해근로자들’의 의미와 범위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피해근로자들”으로 정의하고 있고, 법 제76조의3 제6항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들’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신고한 피해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참고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0. 29. 선고 2023나33721 판결

〈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의 의미와 정도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 의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기간 동안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위 조항에 근거하여 바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개월 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참고판례

청주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1노438 판결

〈 불리한 처우 금지 및 ‘피해근로자등’의 지위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할 뿐, 그 적용 범위나 기간을 제한하거나 사용자의 사실확인 조사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를 달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의한 일련의 절차가 완료되었고,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곧바로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다. 사용자의 사실확인 조사가 객관적임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발각되더라도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빈번한 직장 내 괴롭힘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해석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목적과는 합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3. 직장 내 괴롭힘 조치에 관한 취업규칙 필수 기재의무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위반행위(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7)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러. 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1)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70	130	250
2)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40	80	150
3) 취업규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0	80	150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7])

4. 직장 내 괴롭힘 신고·주장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시 형사처벌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소시효: 5년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5.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행정벌*('21.10.14. 시행)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의3 1. 배우자 2. 4촌 이내의 혈족 3. 4촌 이내의 인척

- 혈족: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등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예시) ▲ 부모·조부모 ▲ 자식, 손자녀 ▲ 형제자매 ▲ 부모의 형제자매 등
- 인척: 혼인에 의하여 관련된 사람(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예시) ▲ 배우자의 부모 ▲ 배우자의 형제자매 ▲ 형제자매의 배우자
▲ 부모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 자식의 배우자 등

위반행위(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7)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법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 사용자가 한 사람에게 수차례 직장 내 괴롭힘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500	1000	1000
2) 사용자가 그 밖의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300	1000	1000
3)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200	500	1000

* 시효 및 제척: 5년

II.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어떻게 되어있나요?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같은 법 제19조(과태료 부과 및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제재의 세부 내용은?

1)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의 친족에 의해 발생한 괴롭힘은 어떻게 보호받나요?

-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 등 제3자 폭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건강장해 예방과 발생 시 조치의무를 법제화

- 의무 미이행 또는 불리한 처우 시 벌칙이나 과태료* 부과 <21p 참고>

* 의무 미이행: 제41조②, 175조④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불리한 처우: 제41조③, 170조 제1호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7] 일반기준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

-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

3) 괴롭힘 행위를 한 사용자(친족)에 대한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는지?

- 직장 내 괴롭힘 가해 행위를 한 '개인'에게 과태료 부과

6. 사용자 조치의무 불이행 시 행정벌*(*21.10.14. 시행)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 제76조의3 제2항·제4항·제5항·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위반행위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7)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파. 사용자가 법 제7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	500	500
하. 사용자가 법 제7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0	300	500
거. 사용자가 법 제76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0	300	500
너. 법 제76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300	500	500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우울증, 적응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질환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음

* 다만, 산재보험급여는 직장 내 괴롭힘과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따라 판단됨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온라인 신청 또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의 산재보상신청 또는 One-Click 산재상담 및 신청을 이용할 수 있고,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음

3 산업안전보건법

- 정부의 책무 규정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포함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 잠깐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제175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1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제1항·제5항·제6항, 제44조제1항 전단,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67조제1항, 제70조제1항, 제70조제2항 후단, 제71조제3항 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1항·제3항·제5항(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 제77조제1항, 제78조, 제85조제1항, 제93조제1항 전단, 제95조, 제99조제2항 또는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법

제41조제2항에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3.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그 밖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법률 규정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일부 행위들은 개별법에서 구체적인 보호내용과 실효적인 제재를 규율하고 있음
- * 이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제76조의2·3)보다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1

근로기준법

사 안	관련 규정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요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제107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	제8조(폭행의 금지) -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제107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징계, 전보 등 인사조치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가능(제28조)
임산부·연소자를 보건상 유해·위험사업에 사용	제65조(사용 금지) -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제109조)
여성·임산부·연소자를 야간·휴일근로에 사용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제110조)
임금, 근로시간과 관련한 법 조항	제36조(금품 청산), 제43조(임금 지급),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제109조)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4조(휴게) -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제110조)



2 형법

사 안	관련 규정
폭행, 상해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제258조의2(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제261조(특수폭행) 등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모욕, 명예훼손	제311조(모욕)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제307조(명예훼손)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협박, 강요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제284조(특수협박)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324조(강요)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성폭행, 성추행	제297조(강간) - 3년 이상 징역 제297조의2(유사강간) - 2년 이상 징역 제298조(강제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 남녀고용평등법

사 안	관련 규정
직장 내 성희롱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사업주: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39조제2항)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와 관련한 법 조항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제19조(육아휴직)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4 민법

사 안	관련 규정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전반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괴롭힘 행위를 방조하거나 이를 방조한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3

직장 내 괴롭힘 분쟁 발생 시 해결방법

1 직장 내 해결

-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가장 큰 목표는 **피해자가 원래의 근로환경에서 근무하도록 원상회복하는 것**임
 - **피해자 보호에 최우선**을 두면서 사안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인격권과 존엄을 존중받으며,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또는 근로자 간에 서로 존중하면서 분쟁을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고 상호간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노사가 함께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개선할 필요
 - * 다만, 괴롭힘 정도가 심각하고 피해자등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객관적 조사와 적절한 보호조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
 - 서로 배려하고 행복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측면에서 함께 예방하고 인식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
- 사용자는 **직장 내 독립적인 조직에서의 조사**, 공정을 기할 수 있는 **외부기관에 조사 의뢰** 등 **신속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조사를 해야 할 것**임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의 접근 방식에 관한 기본 원칙**을 수립하고 조사방법, 태도, 유의사항 등과 관련한 '**조사자 교육**'이 필요하며, 조사 절차나 방식에 관한 **사내 매뉴얼 수립을 권장**
- 또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현행법은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노사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사간 신뢰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협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노사 양측의 공감 및 협조가 중요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자유로운 의견 교환 확대 및 건강한 조직 문화 개선 등 기여 기대

2 고용노동부 신고

- **(신고자)** 피해자, 근로자,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도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 고발 등 가능
 - 지방관서 방문·우편 등을 통해 직접 접수, 인터넷*을 통해 접수
 -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접속 → 화면상단 민원신청 → 서식민원 중 '기타 진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신청
- **(신고 대상 행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객관적 조사 미실시, 사업주 등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조사·피해자 보호 등을 포함한 조치 의무 불이행,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등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항
 - 다만, **고소·고발**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제76조의3제6항 위반인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만 가능**
- **(익명신고)** 신고 사실에 따른 불이익 우려가 있는 경우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
 - 다만,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신분 확인은 불가피(사업장이나 대외적으로 신분이 노출되는 것은 아님)

3 수사기관 고소·고발

-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폭행, 상해, 모욕, 명예훼손, 협박, 강요, 성폭행·성추행 등의 범죄**에도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경찰(형법 등 위반)에 **고소·고발**할 수 있음

4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피해자 등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단, 원칙적으로 1년 미경과에 한함)
 -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② 삭제
 -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却下)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4.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인권교육 수강 등을 권고**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5 민사소송

- 직장에서의 괴롭힘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피해자는 ❶ 행위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❷ 사용자에게 대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및 처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민사상 청구할 수 있음(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56조)
 -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사용자에게 같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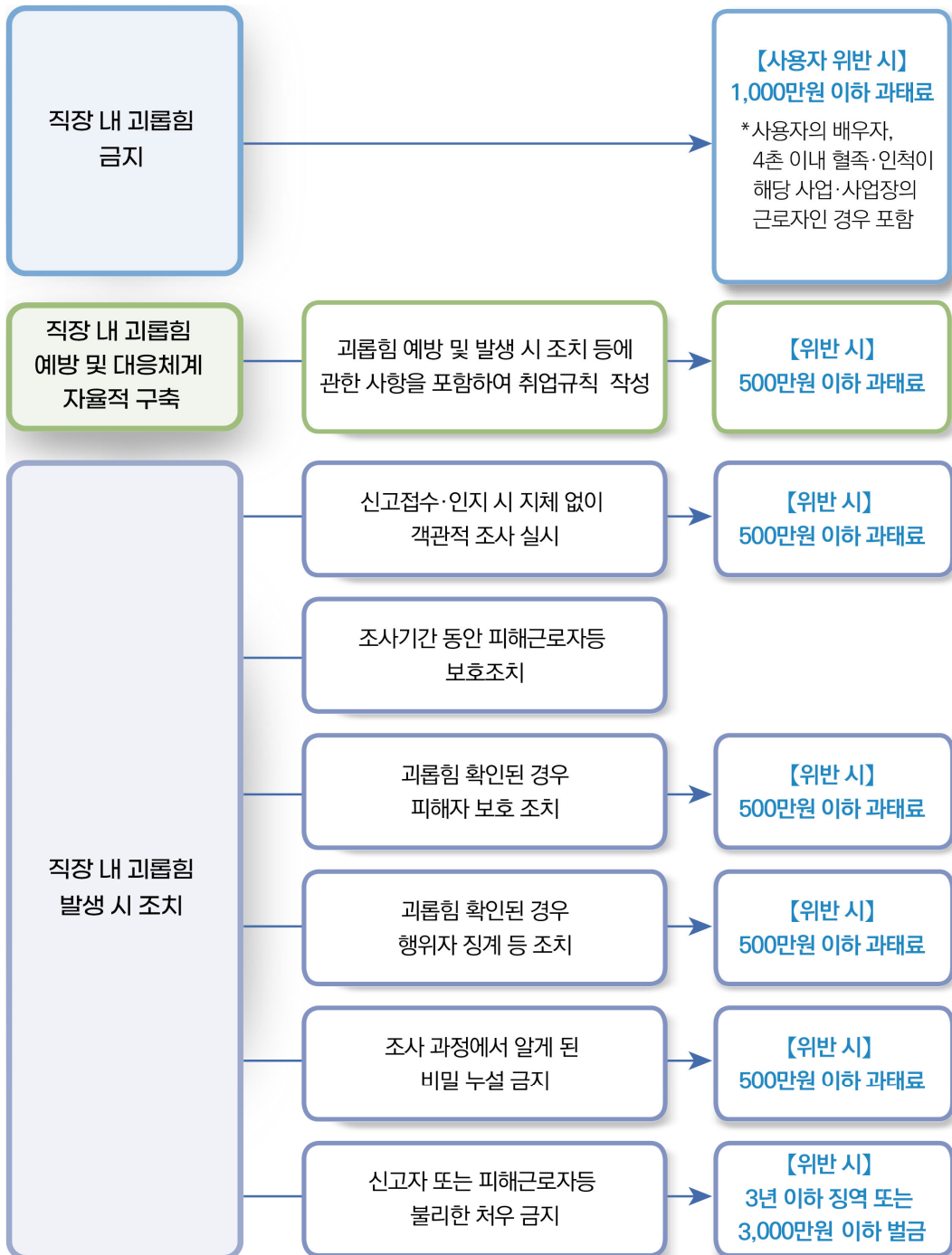
참고판례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고) 직장 내 괴롭힘 불법행위 책임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참조). 또 이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규정 및 제재 요약



* 일반적으로 과태료 부과는 법위반 사실 확인 →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의견제출) → 의견진술 검토 결과 통보
→ 과태료 부과 및 통지 → 납부 또는 이의제기 →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 과태료 재판 순으로 진행

III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1.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분석
2.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적용



1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분석

1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개념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 요약

- (1) 괴롭힘 행위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일 것
(→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보호조치 의무 <21p>)
- (2) 괴롭힘 대상: 다른 근로자
- (3) 행위자의 행위가 아래의 내용을 충족해야 함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 잠깐

직장 내 괴롭힘 개념과 갑질의 개념은 동일한가요?

- **갑질**: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공공부문에 주로 적용,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참고)

*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참고]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이 갑질행위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는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1. 10. 8. 선고 2021구합5180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2구합60395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2나323096 판결 등

※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갑질의 개념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판례

수원지방법원 2021.1.29. 선고 2020가단68472 판결

원고는 C에게 상시적으로 그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하였으며, 피고의 대표이사 역시 D이사 등이 근로자들에게 욕설을 잘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주의를 준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 회사의 임원들이 원고에게 행한 언행의 내용·지속 기간·피해자인 원고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는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참고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5.19. 선고 2022나63476 판결

피고B가 2021.1.11. 원고와 업무관련 전화통화를 하던 중 “내 얘기 잘 들어, 이 새□가”라고 욕설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피고 B사이에 업무와 관련한 통화 중 원고의 업무처리 행태 등에 화가 난 피고 B가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욕설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1회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통화에서는 존댓말을 사용한 점, 피고 B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평소 원고에게 감정적인 반말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B가 원고를 해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업무와 관련한 부당한 압박을 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피고 B가 원고와의 전화통화 중 원고의 업무처리 행태 등과 관련하여 화가 나 우발적으로 1회 욕설한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주요 판단 요소

1. 행위자 : 사용자 또는 근로자

사용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① 사업주

- 사업주는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자체, 개인사업의 경우 기업주 개인

② 사업경영담당자

* 예) 대표이사, 등기이사, 지배인 등

- 사업주가 아니면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

③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 예) 인사노무담당이사, 공장장 등

- 사업주·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의 책임 아래 채용·해고 등 인사처분 할 수 있고, 직무상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
- 형식적인 직위나 직급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내용에 의해 판단하여야 함



참고판례

대법원 2024.7.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사용자 판단의 기준에 관한 판례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했던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참고판례

대법원 1997.11.11. 선고 97도813 판결

법인 등기부 상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제로는 회사를 사실상 경영한 경우 사용자로 본 사례
피고인은 주식회사의 사주로서 형식상으로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회장으로 회사를 직접 경영하여 왔으며, 용역의 수주, 자금관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업무는 피고인과 관리사업담당 대표이사의 소관사항이고, 직원의 채용, 승급, 급여계산 또한 회장인 피고인의 결재사항이라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구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에게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참고판례

대법원 2000.1.18. 선고 99도2910 판결

업무집행에서 배제된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등기된 명목상 대표이사를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로 보지 않은 사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게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참고판례

대법원 2008.4.10. 선고 2007도1199 판결

산하 병원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병원장이 임금 지급을 전결하였더라도, 산하 병원 운영 전반과 예산·자금운용을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 의료원장을 사용자에게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구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

대학교 의료원장은 의료원을 대표하며 의료원 산하 각 병원 및 기관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고, 의료원은 의료원 산하 각 병원의 연간 종합 예산 등의 편성·조정·통제, 각 병원별 자금운용수지 현황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온 사안에서, 의료원 산하 각 병원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해당 병원장이 그 전결사항으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하더라도, **의료원장은 의료원 산하 병원 등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해당한다**



참고판례

대법원 2020.4.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이 개설한 의료기관(이른바 ‘사무장 병원’)에서 의료인 명의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사무장과 실질적 근로관계가 성립한 경우 사무장을 사용자로 본 사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를 이용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인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있어서 비록 의료인 명의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의료인 아닌 사람과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할 경우에는 의료인 아닌 사람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인과 의료인 아닌 사람 사이의 약정이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1980.11.11. 선고 80도1070 판결

학교법인 경영 병원의 원장이 직접 간호원을 채용하였다면 간호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병원장도 사용자에게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고인은 공소의 학교법인 산하 병원의 원장으로서 피고인도 공소의 학교법인의 피용자 지위에 있다 하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본건에서 문제가 된 위 병원의 간호원들은 병원장인 피고인이 직접 채용한 사실(공판기록 20, 21면; 수사기록 39면 참조)을 알 수 있으니 적어도 위 간호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인도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사용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참고판례

대법원 1995.12.5. 선고 95도2151 판결

고용이나 급여의 지급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실질상 직무를 수행한 일반 이사도 사용자에게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전자 주식회사 이사로서 대표이사인 주모과 같이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 회사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질상 직무를 집행하여 왔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게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임금 등 체불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참고판례

대법원 1983.6.28. 선고 83도1090 판결

공사감독을 하지 않은 이사 겸 현장소장은 사용자에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피고인이 회사의 이사 겸 상가건축공사 현장소장으로 있었으나 인부들의 공사감독은 주로 대표이사의 친척되는 공소외인이 맡아보고 있었으며 노임 등도 대표이사가 동 공소외인을 통하여 지급하여 왔는데 대표이사가 수표등 부도관계로 도주한 후로 피고인이 사후수습을 위하여 미불노임등 채무를 조사확인한 사실 뿐이라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15조(1975.1.1.시행)에 규정된 사업경영담당자이거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참고판례

대법원 1989.11.14. 선고 88누6924 판결

생산부서 과장대리를 사용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가 근로자에 관한 어떤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이 이른바 사용자에게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원심으로서 먼저 근로자에 관한 어떤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은 자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 ○○○이 공작과 과장대리로서 근로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사용자라고 단정한 것은 심리미진과 이유불비 아니면 사용자에게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근로자

① (원칙) 피해자의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② (파견)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행위자) → 파견근로자(피해자)

- 판례는 파견법에 따라 파견사업주는 물론이고, 사용사업주도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인정
→ 사용사업주도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조치의무 등을 부담
 -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공동으로 조사·조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공동 조사·조치가 어려운 경우 사용사업주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괴롭힘이므로, 사용사업주에서의 예방·대응 체계에 따라 처리할 것을 권고



참고판례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근로자파견에서의 근로 및 지휘·명령 관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받아 지휘·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사업주는 이를 전제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며,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가 위와 같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잠깐

원·하청 근로자 간 직장 내 괴롭힘은?

- **원청근로자는** 하청근로자와 같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는 **인정되기 어려움**
 - 사업 도급이 빈번한 **원청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하청근로자에게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한 조사·조치를 사내규범에 반영함이 바람직

참고 사내하도급 근로자 가이드라인(2020.11, 일부 발췌)

3.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대응조치

가. 도급사업주 조치사항

- (1) 도급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사내하도급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괴롭힘”이라 한다)와 성희롱을 예방하고 괴롭힘이나 성희롱이 발생하는 경우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규정한다.
- (2) 도급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금지와 예방 등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 (3) 도급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사내하도급 근로자 간의 괴롭힘 또는 성희롱이 문제되어 수급사업주가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도급사업주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주와 공동조사를 실시한다.

- (4) 도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소속 근로자의 괴롭힘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 (5) 도급사업주는 괴롭힘 또는 성희롱에 대한 신고 또는 주장을 이유로 해당 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수급사업주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

나. 수급사업주 조치사항

- (1) 수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가 접수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 (2) 수급사업주는 조사 기간 동안 괴롭힘 또는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휴게시간 연장,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 (3) 수급사업주는 조사 결과 괴롭힘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이를 도급사업주에게 통보하고, 피해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피해자 : 근로자(고용형태, 근로계약기간 등은 무관)

- 임금을 받고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시간제 등 명칭, 고용형태, 계약기간 관계없이 모두 근로자 →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등도 적용
 - 이 외에도 직접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하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으로는 볼 수 없으나,

? 잠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직장 내 괴롭힘은?

- 법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자에 대해서는 민법 및 민법상 일반원칙, 형법 등을 적용한 사법상 해결방법을 인정하고 있음(대법원 2024다207558)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제3자의 폭언 등에 의한 건강장해 보호조치 의무는 고객 응대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의 미조치 또는 불리한 처우에 대해서 제재도 가능(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제3항 등)

잠깐

공무원의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질의회시(근로기준정책과-122, '20.1.6.)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입니다.
 - 다만, 개별 조항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 대법원도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등이 특별법으로서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86다카1355, 94다446 판결 등 참조).
 - 공무원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공무원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공무원 징계령」 등이 우선 적용됩니다.
- 따라서 공무원이 괴롭힘 피해를 받았거나, 혹은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 및 각 기관에 설치된 고충처리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괴롭힘, 갑질 등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신고 등은 인사혁신처에 문의 바람).
 - 아울러 공공분야에서의 갑질, 괴롭힘 근절을 위하여 '19년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분야 갑질 종합대책」에 따라 기관별 갑질신고 센터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19.2)

- ▶ **적용범위**
 - 이 가이드라인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적용한다.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기관·개인 또는 법인과 공무원으로 의제 적용되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3. 행위 장소

- 외근·출장지 등 업무수행 과정 등의 장소, **회식이나 기업 행사** 등의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 사내 메신저·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도 인정 가능

잠깐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에서의 폭언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 익명성이 보장되는 게시판 등에 특정 인물에 대한 폭언을 하는 등의 행위는 행위자 특정도 어렵고 ‘우위성’을 이용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곤란 다만,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특정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라면 조사는 가능할 것임

-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판례나 인권위 결정례를 참고하면, 근무시간 외 직장 밖에서 만난 경우, 퇴근길에서 일어난 경우도 성립 가능

참고판례

서울중앙지법 2017.10.13. 선고 2017나4534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 B의 강제추행 행위는 피고 B가 원고에 대한 직장 상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의 연장인 위탁교육지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호텔방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그 장소가 직장 상사인 피고 B가 위와 같은 위탁교육업무 관련 대화를 하기 위하여 지정한 장소였고, 그 시간도 일과를 마친 이후이기는 하나 일과 중 받은 교육에 대한 후속 대화를 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 B의 추행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출장은 피고 회사의 해외위탁교육을 위한 것이었고, 비록 출장 계획의 기안 과정에서 원고가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긴 하였으나 이 사건 출장계획에 대한 궁극적인 검토 및 승인의 권한, 책임은 피고 회사에게 있었던 점, 나아가 피고 B의 강제추행은 그 출장의 전반부에 실제 위탁교육을 받는 기간 중에 발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민법 제756조의 사무집행 관련성을 인정하는데 지장이 없다.

참고판례

서울행정법원 2021.9.9. 선고 2020구합74627 판결

이 사건 당일 저녁에 열린 회식은 파생공학팀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피해자를 환영하기 위하여 파생공학팀 직원들이 마련한 자리로서 업무의 연장인 사내 행사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위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것은 퇴근에 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는 도중에 동료 직원인 피해자를 성희롱한 것은 참가인 회사의 업무에서 온전히 벗어나기 전에 발생한 행위로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성희롱 행위는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 정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성립 요건

-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우위성) 피해 근로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야 함
 - (우위의 이용)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행위한 것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
 - (복합적 우위) 지위, 관계 중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우위성을 형성할 수도 있으며,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음



참고판례

서울행정법원 2021.9.2. 선고 2020구합68745 판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야 성립하는 것인데, 이 사건 비위 행위는 참가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입수하여 악용한 것일 뿐, 그 과정에서 어떠한 지위나 관계의 우위까지 동원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 44p의 대전고등법원 2023나15101 판결 등과 비교하여 각 사안별 사실관계 살펴 신중 판단 필요

지위의 우위

-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 인정 가능
 - 사실상 관리·감독적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될 수 있음



참고판례

대전고등법원 2024.8.22. 선고 2023나15101 판결

직장 내 괴롭힘에서 규정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에서 **지위의 우위는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 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되고, **관계의 우위는** 직장 내 직급의 문제뿐 아니라 연령·학벌·성별·출신 지역 등 개인의 태생적 또는 후천적 속성 문제, 근속연수·업무지식 등 직장 내 업무역량 차이, 노조나 직장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 가입 여부, 감사·인사부서 등 부서별 영향력 차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로 발생한 실질적 우위이거나, 피해 근로자의 업무상 과오나 비밀의 지득, 가해자의 과도하고 집착적인 요구와 문제 제기 등을 통한 **사실상의 우위로도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반드시 상급자일 필요도 없으며, 동급자나 하급자라 하더라도 관계 등에서 우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참고판례

서울행정법원 2021. 11. 4. 선고 2020구합90032 판결

원고는 의사로서 간호사인 신고인에게 심도사실의 업무를 지시할 권한이 있는바, 설령 원고가 간호사에 대한 근무평정권한, 인사상 조치 등 권한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실상 관리·감독적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라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될 수 있다**.

관계의 우위

-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포함될 수 있음**

구 분	예 시
수적 측면	개인 對 집단 등
인적 속성	연령·출신학교·지역·성별·인종 등
업무 역량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	노동조합, 직장협의회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감사·인사부서 등
정규직·계약직 여부	정규직 여부 등

- 행위자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우위성이 있는지는 특정 요소에 대한 **사업장 내 통상적인 사회적 평가를 토대로 판단**하되,
- 관계의 우위성은 상대적이므로 행위자-피해자 간에 **이를 달리 평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 필요



참고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8. 선고 2022가단5320016 판결

일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할 수 없는 부하직원이 상사에 대한 업무지시 불이행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단순히 직장 내 형식적인 지위 등만을 고려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인정여부를 삼을 수는 없고, 특히 **병원과 같이 의사와 일반 직원이 그 조직 구조를 달리 갖는 경우에 있어서, 직장 내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할 수 없는 하급자라고 하더라도 회사 내의 평판, 여론 등을 이용하여 사실상 상급자의 위치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피해 행위의 정도, 피해 행위의 반복성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판례

서울행정법원 2021.9.9. 선고 2020구합74627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 본인은 피해자보다 직위가 낮지만, 원고와 피해자 및 E 과장 단 3명으로 구성된 ‘콧’ 내에서 가장 선임자인 E 과장과 합세하는 수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지위 및 관계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었고, 이러한 우위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참고판례

서울행정법원 2022.1.18. 선고 2020구합84143 판결

원고(청원경찰 조장 아님)는 메일을 통해 청원경찰 조장이던 피해자 3에게 손괴된 무전기 안테나 덮개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거나(2019. 7. 22. 09:51 메일), 방검복 착용에 관한 내부방침 변경에 대해 비꼬는 말투로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2019. 8. 12. 21:40 메일),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할 것을 요구한 피해자 3에게 **자신의 근무경력이나 연령 등을 내세워 거부하면서** 피해자 3의 얼굴을 보거나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미칠 지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바 (2019. 8. 15. 09:43 메일), 이와 같이 원고가 조장의 지도 및 감독권한을 무시하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조장인 피해자 3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 청원경찰법 제9조의3 제1항, ‘청원주는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2명 이상의 청원경찰을 배치한 사업장의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지휘·감독을 위하여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감독자는 조장, 반장 또는 대장으로 하며, 그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참고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2.6. 선고 2023나22964 판결

피고 B이 목소리를 높이는 하였으나 욕설이나 언어폭력 또는 모욕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던 점, 그 다음 날 피고 D은 피고 B에게 사과를 권유하면서 상호 화해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사과한 점,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와 피고 B의 자리를 격리하여 배치하였다가 원고의 요청으로 다시 원래대로 환원한 점, 피고 D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21. 11월에 총 8일간, 같은 해 12월에 총 9일간 각각 무급휴가를 피고 교육원에 요청하여 원고는 무급휴가를 다녀왔고 원고가 퇴사할 때 위 무급휴가를 모두 유급휴가로 바꾸어 해당 급여를 지급한 점, 원고가 국방부와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 피고 B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로 진정을 하자, 피고 B은 '원고가 "업무 갑질"을 한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의 만기를 채우지 아니한 채 2021. 11. 18. 사직원을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보다 하위직인 피고 B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예시

① 행위자	병원원장의 부친인 사무장 A
② 피해자	물리치료사 B
③ 지위·관계 우위성	A는 병원장의 부친 으로서, B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인정 O, 사무장으로서 업무에 관여 하는 등 지위상 우위를 인정 O

① 행위자	계약직 동료직원 2명
② 피해자	계약직 신입직원
③ 지위·관계 우위성	행위자들은 같은 계약직 직원으로 지위상 우위는 인정 X 다만, 피해자보다 장기근무(각 2년, 3년)하였고 수적 우위도 있으므로 관계상 우위를 이용한 것이 인정 O

① 행위자	따돌린 동료직원들
② 피해자	부당해고 복직 후 본사로 발령받은 사원
③ 지위·관계 우위성	동료 직원들은 피해자와 지휘명령관계에 있지 않고, 직위·직급상 상위에 있는 것도 아니므로, 지위의 우위는 인정 X 수적 우위를 이용하여 따돌리고 있는 만큼 관계의 우위는 인정 O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사용자가 모든 직장 내 인간관계의 갈등상황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 행위자가 피해자에 비하여 우위성이 인정되더라도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및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일 필요**



참고판례

대법원 2021.11.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자선만찬행사를 망쳤으니 **회초리를 맞아야 한다며 나무를 구해오라고 하였고**, 원고가 1m가 넘는 **나뭇가지를 구해오자 몇 대 맞겠냐고 물은 후 이를 부러뜨렸다**. 이때 원고가 우는 듯한 모습을 보여 사과하였으나 계속 **고개를 숙이자 더 숙이지 못하도록 손으로 어깨를 막고 얼굴을 가까이 대었다**. 피고는 **원고가 웃고 있는 것 같아 팔꿈치 윗부분을 잡아 밀쳤으며**, 이 과정에서 **원고에게 살집이 있는 것을 알고 ‘살이 찼다’는 취지로 말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원고의 종아리 부위, 남자친구 유무, 피부 및 관련 제품 사용에 관한 발언을 하였고 **온천수를 사용해 목욕하도록 권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고용 관계 내지 직장의 상급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의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인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참고판례

대구지방법원 2022.06.15. 선고 2021나314644 판결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 ‘**직장 내 괴롭힘**’에는 ‘폭행 상해 등의 신체적 공격행위’나 ‘폭언 협박 등의 정신적인 공격행위’와 같이 명백히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업무상 명백히 불필요한 것이거나 수행 불가능한 것을 강제하는 행위**’, ‘**업무상의 합리성이 없이 능력이나 경험에서 동떨어진 정도의 낮은 업무를 명령하는 행위**’ 등 **외견상으로 업무 범위 내의 행위로 보이는 행위도 포함된다**.

- 다만, 여기에서 업무관련성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6.11. 선고 2019나24567 판결 참고) 직장 동료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본래의 업무나 그것에 통상 수반되는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고 직장 내 인간관계의 갈등 상황에서 비롯된 행위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을 것임



-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 업무관련성 인정 가능

* 개인적 용무 중에 발생한 갈등 상황은 그것이 직장 내 구성원 간에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에게 법상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참고판례

수원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나57784 판결

① 피고 C이 2020. 12. 4.경 및 2021. 2. 17.경 원고의 먹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을 하였고, 이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약4288호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위 약식명령이 2022. 10. 7. 확정된 점, ② 피고 C이 원고에게 '주기적으로 먹살 잡히기 쉽게 후드티를 자주 입고 다니는 건 어때, 지금 옷은 얇아서인지 잘 안 잡혀, 정신 못 차릴 때면 잡고 흔들어줄게' 라고 하거나, 퇴사하려는 원고에게 '넌 상당히 비겁한 새□야', '맨날 녀이 나가 있고 정신 나가 있는 애한테 그럼 내가 어떻게 해? 말로 하면 안 듣고. 그렇게라도 해서 놀라게 해서 정신차리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너처럼 이렇게 멍청한 애를 어떻게 끌고 가'라는 등 폭언을 일삼은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 C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폭언 및 폭행에 해당하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



참고판례

대전지방법원 2022. 6. 17. 선고 2021나125431 판결

이러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이는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자를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위법한 지시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회사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직원들의 인사 및 보직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와의 사전 협의 및 원고의 동의도 없이 경리인 원고에게 총무업무까지 수행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원고의 본래 업무(경리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매점 현황 조사를 지시했고, 그 조사 범위도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보이며, 작성되는 모든 문서를 종이로 출력하여 결재 받도록 하였다. 또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 회사에 해를 끼칠 소지가 다분한 일련의 업무지시를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하였다.

-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함

Ⅲ.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따라서 업무상 지시, 주의·명령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는 곤란
 - 다만, 지시, 주의·명령의 양태가 **폭행이나 과도한 폭언을 수반**하는 등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였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음
 - 또한, 업무상 필요가 인정되더라도 **사업장 내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문제 행위**라면, **사회통념적으로 상당하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음
 - 덧붙여 ‘회사 내 위계질서, 지휘·감독권의 본질, 상사의 지휘·감독권 행사의 목적·행사 방식·횟수, 부하직원의 업무 능력·내용·중요성·시급성 및 부하직원의 지휘·감독권 수용 여부·수용 결과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내용**에 비추어 판단

업무상 적정범위 결여 관련 상황별 행위 예시

* 아래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유사한 사례의 경우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 ▶ “**폭언, 욕설, 헐뜯음 등 언어적 행위**”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등 제3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라 판단되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지속·반복적인 폭언·욕설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해치며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 ▶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행위나 협박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 ▶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사적 용무지시”**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이므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 ▶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등의 행위**”는 사적 인간관계가 아닌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 ▶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시하는 행위**”가 상당기간 반복되고 그 지시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 ▶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행위**”는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등 상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 ▶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인트라넷 접속 차단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없는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 그러나, 모든 근로자에게 비품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이 있거나 일시적인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황이라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보기 어려움



참고판례

대전지방법원 2021.11.9. 선고 2020구합105691 판결

근무시간 외인 오전 6:26에 카카오톡을 보내어 업무지시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여 압박 주장 메시지의 내용, 메시지를 보내게 된 동기, 시점, 전후 상황, 참가인과 위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A는 B에게 보도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당 기사를 언급하며 보도자료의 준비를 독려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메시지를 보낸 시간이 근무시간 전이기는 하나 **인터넷 기사의 특수성, 신속한 보도 자료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A가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B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괴롭혔다고 보기 어렵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보통의 사람 입장에서 보아 고려 할 필요
 - *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 손상, 신체적 통증, 기능저하나 정신장애, 불편감, 스트레스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감내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근무환경 악화’란,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
 - 근무공간을 통상적이지 않은 곳으로 지정(예: 면벽근무 지시)하는 등 인사권의 행사범위에는 해당하더라도 **사실적으로 볼 때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절한 환경 조성이 아닌 경우** 근무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편, 근무환경 악화 여부는 해당 행위 이후 피해자의 업무수행, 의사소통, 근무장소 이용 등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였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음



참고판례

서울행정법원 2021.11.1. 선고 2020구합90032 판결

신고인은 2019.3.19.에 원고를 윤리위원회에 제소하였고, 원고는 **개인적인 메일이나 문자, 업무배제, 단독방에서 훈계조 언급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신고인에게 관계개선 및 신고 취하 등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전송하였다. 그 외에도 원고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신고인과의 문제에 관한 생각, 신고인의 업무 관여 거부의를 밝혔다.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고, 이로 인하여 신고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보인다.



참고판례

수원지법 2024.6.11. 선고 2022가단562363 판결

이 사건 이슈에 관한 피고 3인의 지시가 업무상 적정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문제 발언은 비속어 또는 욕설이 혼재되어 있어 공격적이고, 듣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발언 경위, 내용, 발언 후 당사자들의 관계 등에 관한**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제 발언 만으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보기 부족하다.



잠깐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한 적극적 구제방법

면벽근무 지시와 같은 인사권상의 사실행위가 아니라 해고·감봉·전보·전환배치 등 인사조치 자체가 부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직접적 처벌 규정 있는 경우 해당 절차 진행이 바람직

-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



3 종합적 판단

-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판례를 참고해 볼 때,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는지에 대하여는
 -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기존의 고통이 악화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인정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함
- * 피해자에게 문제 행위 이전부터 정신질환, 심리적 고통, 업무 부적응 등 다른 원인이 존재하였던 경우에는, 진단서나 피해 호소만으로 곧바로 결과 요건을 인정하기보다, 문제 행위 전후의 증상 변화, 업무수행 상태, 치료 경과, 주변 진술, 근무환경 변화 등을 종합하여 해당 행위와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임



참고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가단239162 판결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당사자의 관계·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행위의 내용 및 정도·행위가 지속된 기간 등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되, 피해자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보통의 사람 입장에서 보아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실제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참고판례

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직원들을 여러 차례 괴롭힌 본부장에 대한 해고를 정당하다고 봄

1. 재심판정의 경위

- 가. 원고는 상시 약 3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서울 □□ D에서 생활가전, 의료용품의 판매 및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3. 1. 11.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2014년경부터 ○○○○○○ 사업부의 운영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 다. 원고는 2019. 7. 11.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해당 순번별로 '징계사유1) ~ 3)'로 각 칭하고, 징계사유 3)의 세부사유는 '징계사유 3)의 ① ~ ⑧'로 각 칭한다)로 참가인에게 2019. 7. 12.자 해고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 라. 참가인은 2019. 7. 12.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고, 원고의 재심징계위원회는 2019. 8. 6. 이 사건 해고를 유지하기로 의결하여 이를 같은 달 9. 참가인에게 통지하였다.
- 마. 참가인은 2019. 9. 9. ○○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1. 12. 「징계사유 1), 2) 및 징계사유 3)의 ②, ⑥, ⑧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징계사유 3)의 ①, ③, ④, ⑤, ⑦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해고는 위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을 하였다.
- 바. 원고는 2019. 12.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4. 1.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징계사유

- 1) 2019. 6. 20. 10:00 사무실에서 팀원인 E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림
- 2) E을 폭행한 후 "□□(여성)을 때릴 수 없잖아"라는 성차별적 폭언을 함
- 3) 최근 1년여의 기간 동안 다수의 팀원들에게 여러 차례 폭언과 부적절한 행동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함
 - ① E 차장 폭행 다음 날 '에이 열받아'라고 하며 한 직원의 팔을 출입증으로 치고 지나감
 - ② 팀 미팅에서 한 직원을 질책하면서 볼펜을 집어 던져 책상에 떨어진 적이 있음
 - ③ 팀 미팅에서 '어떤 AM(회계담당자) 때문에 pending(보류)되는 거야? 그놈 모가지를 비틀어 버리겠어. 데려와'라는 말을 함
 - ④ 협력업체 직원을 지칭하며 '그놈 입을 찢어버리겠다'고 하는 통화를 한 적이 있음
 - ⑤ 팀 회의 중 한 직원의 말을 중간에 끊으며 '아저씨는 가만히 있어'라는 말을 함
 - ⑥ 팀 미팅에서 '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말이 많냐'는 말을 함
 - ⑦ 두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왜 일을 안 했냐? 내가 주는 스트레스가 적다'는 말을 함
 - ⑧ 한 직원과의 미팅에서 '너의 눈빛, 걸음걸이,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고 말해 직원이 두려움을 느낌

〈 중 략 〉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라.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라) 징계사유 1), 2)는 물론 징계사유 3)의 ① 내지 ⑧은 대부분 2018. 4.경의 선행 폭행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로 보이며, 참가인은 선행 폭행 사건이 일어난 이후 1년여의 기간 징계사유 3)의 ① 내지 ⑧ 외에도 참가인 팀의 부하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유사한 형태의 폭언을 하고 본부장이라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청원경찰의 괴롭힘 행위로 인한 지자체 해임처분을 정당하다고 봄

〈 중 략 〉

- 나) 그런데 C병원의 청원경찰 조장이 아니었던 원고는 약 2개월 동안 피해자 1의 언행이나 근무 상태를 문제 삼는 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위 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원고는 일지 작성 및 보고에 관한 피해자 1의 질문이 전혀 의미 없다거나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이야기로 치부하면서 ‘개념 없는 이야기는 앞으로 하지 말라’고 하거나(2019. 7. 24. 01:18 메일) 그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 1의 언행을 지적하고(2019. 7. 25. 10:15 메일), 업무 지시는 조장을 통하도록 요구한 피해자 1에게 오히려 피해자 1의 위 요구가 직장 내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거부하는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2019. 8. 15. 09:56 메일), 야간근무자가 비워놓기로 한 쓰레기통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묻는 피해자 1에게 쓰레기통을 비우고 씻은 다음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등(2019. 9. 24. 문자메시지) 원고는 자신이 선배이고 연장자임을 강조하면서 **피해자 1에게 지속적으로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해자 1이 2019. 7. 26. 메일을 통해 원고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그만 둘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위 메일이 ‘막가파식 메일’이라거나 ‘당황스러워 자살하고 싶다.’는 등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피해자 1의 요구를 거부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멈추지 않았다.
- 다) 원고는 2019. 9. 4. 피해자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서울특별시 인권센터에 신고된 후, 2019. 9. 20. 저녁 업무교대 직후와 그 다음날 새벽에 야간근무 중인 피해자 1을 찾아와 사진 촬영하는 등으로 감시하였고, 야간근무자가 아님에도 숙직실을 이용하면서 출입문을 잠그는 등 **피해자 1이 새벽 휴게시간에 휴게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중략〉
- 라) 원고는 위와 같이 2019. 9. 21. 01:25경 피해자 1에게 ‘**정신건강이상자 행세를 하는 등 정상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해자 1이 아무 이유 없이 순찰 코스도 아닌 지하 1층의 숙직실에 찾아와 원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안을 둘러보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여 보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사건 경위, 원고가 촬영한 동영상(갑 제13호증)에 나타나는 당시의 상황이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1은 야간근무자가 아님에도 허가 없이 새벽시간에 찾아와 자신을 촬영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원고의 행적을 쫓아 지하 1층의 숙직실까지 순찰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마) 원고는 여성인 피해자 2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관련하여, 출근하기 전부터 속이 불편한 상태에서 당시의 상황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속이 더부룩하여 안된다는 자신의 신체상태를 표현하고자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문자메시지 내용은 그 맥락에 비추어 피해자 2의 용모를 비하하는 표현임이 분명하고, 경험칙상 이를 전송받은 피해자 2로서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 바) 원고는 메일을 통해 청원경찰 조장이던 피해자 3에게 손괴된 무전기 안테나 덮개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거나(2019. 7. 22. 09:51 메일), 방검복 착용에 관한 내부방침 변경에 대해 비꼬는 말투로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2019. 8. 12. 21:40 메일),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할 것을 요구한 피해자 3에게 자신의 근무경력이나 연령 등을 내세워 거부하면서 **피해자 3의 얼굴을 보거나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미칠 지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바**(2019. 8. 15. 09:43 메일), 이와 같이 원고가 조장의 지도 및 감독권한을 무시하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조장인 피해자 3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참고판례

울산지방법원 2021.4.15. 선고 2020구합330 판결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갑질행위 등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른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봄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중략> 2019. 7. 4.부터는 ○○군 D면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 나. 피고는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내부적으로 설정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갑질행위를 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른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광역시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2019. 10. 15.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중 략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다. 판단

2) 제1 징계사유 관련

< 중 략 >

- 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증거들, 갑 제4호증의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해당 직원이 2019. 4. 24.부터 5. 2.까지 9일간 상신한 보고서는 12건으로, 원고는 위 3건을 제외한 나머지 9건은 해당직원이 보고서를 상신한 날 즉시 결재를 한 점, ② 원고는 보고서를 반려하는 경우 반려사유를 기재하거나, 해당 직원에게 구두로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회의 시 소속 직원들에게 긴급한 사항은 결재를 상신함과 동시에 이야기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유를 제시하며 해당직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수정·반려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해당 직원에게 갑질을 하여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제2 징계사유 관련

-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해당 직원은 원고가 본인에게 돼지비계라는 표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승강기에 같이 있었다고 하는 ○○군청 축수산과 소속 F은 원고가 해당 직원에게 운동을 독려한 사실은 있으나 돼지비계라는 단어로 비교한 사실은 없다는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어, 원고가 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특정한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설령, 원고가 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해당 직원과의 관계, 발언 횟수, 당시 상황, 원고의 발언 의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해당 직원에게 갑질을 하여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제3 징계사유 관련

- 원고는 2019. 3.경 G농업협동조합장에게 통화를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무렵 G농협 직원이 소속부서 직원에게 항의를 하며 부적절한 말(소속 직원에게 '아줌마'로 호칭, '한 대 맞을랍니다'라는 표현을 사용)를 했던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위와 같은 사건을 보고 받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 언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참고판례

광주지방법원 2021.3.25. 선고 2020구합12827 판결

마) 가-⑤ 비위사실 관련

을 제7 내지 11,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가-⑤ 비위사실과 같은 발언은 비인격적 언행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① 서○○는 검찰 조사에서 원고가 직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박○○ 같으면 울어도 세 번은 울었겠다. 서○○는 배포가 큰 건지 아직 한 번도 안 울었어.”라고 발언한 적이 있는데, 그 발언을 듣고 원고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도 자각하고 있다고 느꼈고, 원고가 이런 식으로 부하직원을 굴복시키고 괴롭히는 행위에서 희열을 느끼고 본인의 권위인 것처럼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혼란스럽고 자존감이 바닥까지 내려가 참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중략>

사) 가-⑦ 비위사실 관련

을 제7, 8, 10, 11호증의 각 기재, 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가-⑦ 비위사실과 같이 위협적인 비인격적 언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① 김□□은 검찰 조사에서 원고가 2019. 8. 5. 오후경 수사과장의 사무실에 다녀와서 공○○, 김□□, 김△△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서○○한테 이렇게 한 것은 동생 같아서 그런거고 오해없길 바란다. 본인이 뭔 말이 없는데 왜 주위에서 이러냐. 우리 조직은 너네도 겪어보면 알 것이다. 당사자도 징계를 받겠지만 결국은 내부고발자도 보호받지 못한다”고 발언하였다고 진술하였고(김□□은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김△△도 검찰 조사에서 원고가 2019. 8. 5. 거의 퇴근 직전에 수사과장 사무실에 다녀와 직원들에게 “과장님이 불려서 다녀왔는데, 내가 초창기에 이야기 하지 않았냐. 우리 사무실 일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야기 하지 않았냐, 출처는 캐지 않겠지만 나랑 서○○의 관계가 그렇게 심각한 거냐, 왜 본인은 괜찮다는데 옆에서 이런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발언하면서 혼자 중얼거리는 식으로 “우리 조직이 이런 일이 생기면 당장은 당사자한테 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엔 내부 고발자도 들통나게 되있어.”라고 발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김□□와 김△△의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그 내용이 신빙할 만하다. <중략>

자) 가-⑩ 비위사실 관련

갑 제5호증, 을 제7, 8,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가-⑩ 비위사실과 같이 김□□에게 술을 강요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① 김□□는 검찰 조사에서 원고는 회식을 할 때 맥주잔에 소주를 따라 마시고 다른 부서보다 술을 잘 마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부서에 술을 많이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부서의 막내인 자신 밖에 없어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 많은 양의 소주를 마셔야 하는 게 부담이 되었고, 몇 번은 마시다가 못 마시겠다고 하자 원고가 “아이 새◇야 이것도 못 마셔? 마셔! 마셔야지!”라고 발언하여 억지로 마신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② 김△△는 검찰 조사에서 원고가 회식을 할 때 김□□에게 맥주잔에 소주를 따라 주면서 술을 마시라고 하였고 김□□가 잘못 마시겠다고 하면 “아이씨! 마셔!”라는 식으로 발언하여 김□□가 마지못해 마시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서○○도 검찰조사에서 원고가 회식을 할 때 김□□에게 맥주잔에 소주를 따라서 마시도록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③ 김□□는 이 법정에서 원고가 가-⑩ 비위사실과 같은 언행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를 강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상급자인 원고와 김□□의 관계, 원고가 술을 마시라고 한 상황과 당시 발언의 내용, 김□□의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가-⑩ 비위사실과 같은 언행은 상급자로서 부당한 지시로 보아야 한다.

2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적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1 원칙

▶ 파견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로 당연히 사용자이며,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파견법에서 사용자로 규정

● 파견근로는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 모두 근로기준법의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파견법 제34조제1항)

-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규정(제76조의2, 제76조의3)의 사용자 의무·책임도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 모두에게 있음
- 따라서,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가 공동으로 조사·조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다만,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는 해당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사업주가 해야 할 것임
- 다만, 공동 조사·조치가 어려운 경우 사용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괴롭힘 이므로, 사용사업주가 사용사업장의 예방·대응 체계에 따라 조사·조치하고 조치의 성격상 파견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내용은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고, 파견사업주는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2 사례별 사용자 의무·책임 주체

□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 등 보호조치,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 조치는 피해자 및 피해 상황, 사업장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의무·책임의 주체가 달라질 수 있음

● 파견근로자가 피해자이고,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가해자인 경우

-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조치)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는 사용사업주만이 할 수 있으므로 사용사업주에게 조치 의무 이행 책임이 있음
-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분리 조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분리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에게 있으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분리가 불가피하나 사용사업장의 상황이 장소 분리가 불가능하다면 피해자의 동의하에 파견사업주가 다른 사용사업장으로 파견을 보낼 수 있을 것임

● 파견근로자가 가해자이고,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피해자인 경우

-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조치) 파견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는 파견사업주만이 할 수 있으므로 징계 등 조치 의무 이행 책임은 파견사업주에게 있음
-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분리 조치) 피해자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보호 조치는 사용사업주만이 할 수 있으므로 조치 의무 이행 책임은 사용사업주에게 있음

IV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체계

1. 자율적 대응의 필요성
2.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내 규범 마련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활동



1 자율적 대응의 필요성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취지

-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되,
 - 구체적 대응은 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취업규칙 등을 통해 정하고 그에 따르도록 유도하는 데 있음
 -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



잠깐

사업장에서 자율적 대응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방법이 없나요?

아닙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접수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특히, '21.10.14.부터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와 사용자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실효적 제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잠깐

취업규칙 규정이 근로기준법 내 규정보다 완화된 내용을 정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 완화된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의 강행규정 내용과 모순·저촉되는 경우, 그 취업규칙 규정은 해당 부분에 대해 무효라고 해석됩니다.

2 근로관계에서 비롯한 사용자의 배려의무

- 판례에서는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관계에서 비롯한 배려의무로서 근로자의 인격권 보호 및 쾌적한 근로환경 제공의무가 있다고 명시
 - 따라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음



참고판례

대법원 1996.4.23. 선고 95다6823 판결

근로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격체이고 근로자는 자신의 전인격을 사용자의 사업장에 투입하고 있는 점에서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근로제공은 자신의 인격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근로제공은 단순히 임금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는 근로를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나아가 기술을 습득하고 능력을 유지·향상시키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등으로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시키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자신의 업무지휘권·업무명령권의 행사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하여 이와 같이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참고판례

대법원 1998.2.10. 선고 95다39533 판결

근로관계는 이른바 계속적 채권관계로서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고용계약에 있어 피용자가 신의칙상 성실하게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에 대하여, 사용자로서는 **피용자에 대한 보수지급의무 외에도 피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피용자가 그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피용자의 생명, 건강, 품기 등에 관한 보호시설을 하는 등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피용자를 보호하고 부조할 의무를 부담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의 생명·건강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기업에도 법적·사회적·경제적 손실을 가져옴**
 -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된 사업장의 경우 사안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책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 법적 분쟁 비용 발생**
 -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이직 및 업무능력 저하의 요인***이 되어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 * 최근 1년 이내 이직 경험자의 48.1%가 이직 사유를 괴롭힘으로 꼽음(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17)
 -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대처대응 방법으로 17%가 사직으로 나타남(고용노동부 실태조사, '24)
 - 직장 내 괴롭힘 **1건에 대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1,550만원으로 추산***한 연구결과도 있음
 - * 피해자의 결근, 근무의욕 저하 등에 따른 근로시간 손실분, 대체인력, 괴롭힘 조사 비용 등을 바탕으로 계산
 - 또한 사회적으로 **기업 이미지 하락으로 인한 손실도 발생**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이론에 의하면 **직장 내 괴롭힘**은 일시적인 사건이나 개인 성격의 차원을 넘는 **구조적이고 통합적인 문제**
 - 괴롭힘에 대한 **조직 차원의 전략적 대응 수준이 구성원 각각의 사회심리적 성향에 영향**을 미치면서 개인과 조직에 모두 큰 영향을 끼침

2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내 규범 마련

1 사내 규범을 통한 직장 내 괴롭힘 규율의 의의

- 외국의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에 관한 매뉴얼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최고경영자에 의한 정책선언문과 이를 실현하는 자체규범의 제정**임
 - 이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에서도 사내 규범인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함

2 취업규칙의 작성

1. 취업규칙 작성·변경절차 개관

-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음
 -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작성된 취업규칙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거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해서는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은 이를 포함하여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취업규칙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신고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사내 징계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필요**
 - **그 외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절차 관련 내용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정하면 됨

2.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작성 시 고려사항

-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범 마련 시에는 기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사업장에서 금지되는 비위행위임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①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된다는 것, ②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는 강력한 제재를 한다는 것, ③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직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
- 취업규칙 등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규정할 경우 아래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
 - 취업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 내용에는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고충상담, ▲사건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제재, ▲재발방지대책 등이 있음
 -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고충·사건 접수기관을 명시하여 괴롭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 좋은 규정은 소속 기업의 구성원들에게 행위 규범을 분명히 제시하여, 바람직한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것임
 - 따라서 법상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감안하여 해당 기업에서 금지하는 괴롭힘 행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필요
 -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유형을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경우 괴롭힘 판단에 대한 구체적 기준으로 활용될 수 없다는 단점을 감안해야 함
 - 예시를 통해 조직구성원들에게 금지행위가 무엇인지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규율하는 것이 좋고,
 - 이 경우 기업이 처한 내·외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발생 가능한 괴롭힘 유형을 가능한 한 충분히 명시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조치절차 등 기존의 고충처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음
 - 한편, 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괴롭힘 행위의 수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정해야 할 것이고, 징계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합리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함

3. 근로자 참여를 통한 규범화 과정의 중요성

- 직장 내 괴롭힘 규율 과정에서의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 사내에서 금지되고 위반 시 제재를 받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 구성원들이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

- 전 직원 대상 설문, 부서별 토론, 노조·노사협의회·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조직 단위의 의견 반영, 인사·노무·교육·홍보·재무·법무·감사 등 유관 업무담당자의 의견 수렴 등 다양한 통로를 활용하여
- 사업장에서 금지되어야 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유형을 도출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예방 분위기 형성, 제도에 대한 신뢰 구축 등 기대 가능**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관련 취업규칙 표준안: **참고 6** 141p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활동

1 최고 경영자의 정책 선언

- 사업주 등 **최고 경영자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메시지를 선언**하는 것이 효과적인 예방조치의 첫걸음임
- 이러한 경영진의 의지를 보여주는 **정책 선언문 또는 윤리강령의 선포를 검토**해볼 수 있음
- 정책선언문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를 표현할 때에는 ‘반(反) 괴롭힘 정책’ 또는 ‘존중 일터 정책’ 등 최고 경영자의 의지를 확실히 표명할 필요
- ‘반(反) 괴롭힘 정책’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회사가 이 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반(反) 괴롭힘 정책 선언문 예시

1. 회사는 직원들을 존중하고,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다.
2. 회사는 직원들의 인격이 무시되는 어떠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용인하지 않음을 분명히 선언한다.
3. 경영진은 직장에서의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중요하게 다루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그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
4. 관리자는 직원들이 회사 생활을 원만하게 하도록 돕고, 직원들 간의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예의주시하여야 한다. 또한, 직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신경써서 사전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5. 직원들은 다른 직원을 대함에 상호 존중을 기본으로 삼아야 하며, 다른 직원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행동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존중 일터 정책 선언문 예시

- 하나. 직원들은 인격을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 둘. 회사는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직원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어떠한 경우라도 인정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 회사는 직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인권의 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직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의 복구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 셋. 회사는 물리적인 근무환경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정신적 건강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이다.
- 넷. 경영진은 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근무환경이나 요소들이 없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직원과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 다섯. 관리자는 부하직원을 대함에 있어 항상 부하직원을 존중하며, 부하직원이 사내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 여섯. 직원은 다른 직원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하며, 다른 직원과의 소통에 있어서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 ‘존중 일터 정책’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포함하여 직장에서 직원의 인권은 어떠한 경우라도 존중되어야 하며, 직원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인정하지 않음을 포괄적으로 선언함을 의미함
- ‘존중 일터 정책’을 채택하는 경우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도뿐만 아니라, 직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검토하는 것을 권고

2-1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위험요인 점검

● 직장 내 괴롭힘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함

- 회사는 사전에 직장 내 괴롭힘의 위험요인을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필요

● 단순히 괴롭힘 실태만 조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조직문화·커뮤니케이션·업무의 명확성·권한과 책임의 적절성** 등에 대한 점검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

- 노조,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근로자 측이 참여한 기구를 통하여 노사가 함께 점검하고 예방조치를 협의하는 것이 예방 효과가 더욱 큼

✓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점검 체크리스트

영역	내용	측정방법
조직문화	1) 조직문화의 경직성에 대한 검토 2)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의 원활성에 대한 검토 3) 부정적 리더십의 확인 - 직원의 자율성이 허용되지 않는 경직되고 독재적 스타일인지 - 근로자에게 지침을 거의 또는 전혀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무 - 책임의 부적절한 비공식적 위임 여부 - 부적절한 또는 경멸적인 언어 또는 악의적인 비판과 피드백을 포함하는 학대 및 모욕적인 행동 유무 4) 사업장 내 관계의 부족함 확인 - 의사소통의 부족 - 낮은 수준의 지원 - 소속팀에서의 불화 - 권한과 책임의 불명확성	- 설문조사 - 다면평가 - 퇴사자 인터뷰
직무수행	1) 직장 내 스트레스 요인의 존재 - 업무에 대한 압박 정도, 통제 정도 - 구조조정이나 중요한 기술적 변화에 따른 조직 변화 - 고용불안도 - 직장 내 행동기준이 되는 구체적 규율 부족 - 부당노동행위 - 고객의 부당한 요구의 수용 정도 2) 업무시스템 - 충분한 자료제공 여부 - 충분한 교육훈련 여부 - 업무·작업 일정의 적절성 - 불합리한 업무 명령 또는 시간 제약 여부	- 설문조사 - 노사협의회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근로자협력기구에서의 의견 취합
직장 내 괴롭힘 실태 파악	1. 나의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했다. 2.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을 했다. 3. 나에게 내 본연의 업무와 상관없이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주었다. 4. 정당한 이유없이 내 본연의 업무와 관계없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았다.	- 설문조사 - 다면평가 - 퇴사자 인터뷰 - 노사협의회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근로자협력기구에서의 의견 취합

영역	내용	측정 방법
	5. 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를 제외했다. 6. 내 성과를 가로채거나 성과 달성을 방해했다. 7. 나에게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주었다. 8.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했다. (예: CCTV를 통한 감시) 9. 사고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 나에게 주의사항이나 안전 장비를 전달해주지 않았다. 10. 나에게 상사의 관혼상제나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했다.(예: 개인 심부름 등) 11. 나에게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했다. 12. 누군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사소한 일에 트집을 잡거나 시비를 걸었다. 13. 누군가 내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렸다. 14. 나에게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했다. (예: 물건던지기, 주먹질 등) 15. 나에게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했다. 16. 나를 부당하게 의심하거나 누명을 씌웠다. 17. 누군가 내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거나 망가뜨렸다. 18. 다른 사람들 앞에서(또는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했다. 19.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 흡연을 강요했다. 20. 내 의사와 관계없이 회식 참여를 강요했다. 21. 나의 정당한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무시했다. 22.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필요한 추가근무(야근, 주말출근 등)를 강요했다. 23. 정당한 이유없이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징계를 하였다.	※ 본 실태파악을 위한 점검사항은 KICQ(2016)를 인용한 것으로서, 각 사업장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
근로자	- 직무만족도 - 이직의사 - 신체적 건강상태(건강검진, 병가 등) - 우울증, 불안 등 정신적 건강상태	- 설문조사 - 정기건강검진 등

2-2 사업장 자체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 직장 내 괴롭힘을 행위자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여서는 근본적인 개선과 예방은 불가능함
 -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실제의 언행으로 나타나는 주된 이유에는 이를 용인하거나 묵시하는 조직 문화도 큰 비중을 차지함
 - 사용자와 근로자, 상급자와 하급자 등 다양한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의 상호존중하는 수평적인 문화와 투명하고 공정한 고충처리가 보장되는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억제됨
- 상호존중하는 직장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주기적으로 진단하여 그 변화를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참고 5** 설문조사표를 참고하여 **자체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 그 결과에 기초한 **개선방안을 수립·추진**할 필요
 - 다만, 설문조사표는 예시일 뿐으로 개별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설문을 수정하는 등 보다 실효적인 조직문화 진단에 활용

「직장인 근무환경 설문조사표(138p참조)」 사업장별 활용 제안

- ① 사업장 내 **관계, 직무, 구성집단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된 **응답자 특성**을 작성
 → 고충 집단을 구체적으로 파악
 * (예시) 병원: 의사 / 간호사 / 진료보조 / 행정업무 등으로 세분화
- ② 현재 운영 중인 주요 인사노무관리 제도나 방안 등과 관련된 질문을 작성하여 **제도변화에 따른 조직문화 반응 및 변화를 모니터링**
 -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충처리 관련 제도는 부연설명 첨부**
- ③ 설문조사표 Ⅱ.와 Ⅲ.에 우리 회사관련 자주 접한 고충들을 추가
 - 보건·IT·돌봄 등 업종은 **업종별 특성에 맞춰 질문을 추가·활용 권고**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예방을 위한 실효적 방안으로 **임직원 대상 교육을 필수적으로 고려할 필요**
 -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관계상 우위 있는 사람이 행할 가능성이 크므로 **관리자 이상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수료할 필요**
 - **관리자 교육과 직원 교육을 분리하여 실시할 필요**
 - * 고용노동부 및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홈페이지에 교육자료 및 영상자료 공개

-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정기 계획을 마련하고,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되는 경우 **수시 추가 교육이 바람직**
- 기존의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산업안전관리 교육 또는 인권교육에 콘텐츠와 시간 등을 확대·보완하여 진행하는 방식도 가능

교육 내용 및 대상		근로자	관리자
괴롭힘의 정의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	√
	직장 괴롭힘 행위의 유형 및 사례	√	√
근로자 보호	근로자의 권리: 괴롭힘 당하지 않을 권리, 피해 사실 호소 후 보호받을 권리 등	√	√
	괴롭힘 목격 시 목격자의 역할	√	√
직장 내 괴롭힘의 원인과 피해	개인 차원의 직장 괴롭힘 원인	√	√
	조직 차원의 직장 괴롭힘 원인	√	√
	개인 차원의 피해	√	√
	조직 차원의 피해	√	√
괴롭힘 대응	신고하기 위한 회사 내부의 소통창구	√	√
	노조 등 근로자 단체의 대응	√	√
	신고하기 위한 회사 외부의 소통창구	√	√
	괴롭힘을 겪을 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조치	√	√
	사례접수 시 관리자 / 담당자가 할 수 있는 조치	√	√
	직장 괴롭힘 대응 절차의 사례	√	√
	예방을 위한 경영자 / 관리자 역할의 중요성		√
추가로 고려할 수 있는 콘텐츠	<공통> • 관련 법규, 인권 및 평등 교육 • 우리 회사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예시 토론 • 특정 행위가 괴롭힘임을 파악할 수 있는 증상 진단 방법		
	<관리자용> • 관련 법규 및 가해자 처벌 방법 •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 운영 방법 • 특별교육(가해자 재발 방지, 피해자 보상 등) • 경찰과 외부 공조 • 문제 상황에 대한 소통역량 강화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내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항을 규정

잠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202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관 한 사항을 포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정기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내용은 별표5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 별표5에 따르면, 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에서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산안법제175조 제5항 제1호).

4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담당자의 지속적 운영

- 직장 내 괴롭힘은 조직분위기와 문화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해당 조직의 구조와 인적 특성에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 중장기적으로 예방 및 대응을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담당 조직(담당자)을 별도로 두는 것이 좋으며,
 - 담당 조직(담당자)을 중심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대한 분위기가 지속 확산되고, 상호 존중문화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
- 직장 내 성희롱, 고충상담 업무 담당자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도 있으나
 - 성희롱과 괴롭힘은 다른 측면이 있는 만큼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

5 다양한 방식을 통한 캠페인과 제도 홍보

- 정기 교육뿐만 아니라, 간략한 교육내용이 반영된 리플렛 제작, 포스터 게시, 급여명세서 등에 캠페인 문구 반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
-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신고 및 구제절차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해
 - 평소에 관련 상담창구 및 신고절차 등에 대해 교육·홍보하여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키는 것이 필요
- 일정 기간을 정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선언 동참 캠페인 실시도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인식개선에 기여



잠깐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선언문 예시

하나. 우리회사는 직원들을 존중하고,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둘. 우리 회사는 직원들의 인격이 침해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셋. 우리 회사의 모든 구성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직장문화를 함께 만들겠습니다.

6 주기적인 예방정책 및 제도 평가

- 회사 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예방 및 대응제도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 직장문화와 인식의 변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의 추이 등을 살펴보고 예방정책의 방향이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규율에 변경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

V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의 조치

1. 원 칙
2.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내 처리 담당체계
3. 사업장 내 조사·조치 절차별 고려사항



1

원 칙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사업장 내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상태의 회복, 인격권이 보호되는 근무환경의 확립**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 다시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
 - 또한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조치, 전반적인 조직문화·제도의 개선 등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처리절차는 **기존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처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음**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 시 신속하게 처리하되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상담을 통한 고충처리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해결을 먼저 모색한 후 정식 조사절차로 돌입할 수 있음**
 - **당사자 간 해결**은 피해자에 대한 행위자의 괴롭힘 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행위자가 직접 사과, 재발방지 약속 등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정식 조사절차**는 사업장 차원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을 다방면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후 행위자에게 공식적인 징계를 비롯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조치와 관련하여 갈등과 괴롭힘의 수준과 맥락을 고려 비례적 조치가 필요

? - 잠깐

당사자 간 해결에 있어 조사를 미이행 한 경우, 법 위반인가요?

- 당사자 간 해결을 원하는 경우, 행위자의 괴롭힘 행위 인정과 사과 등 '**당사자 간 해결**' 처리 전반에 대한 경과 및 결과 등 **약식조사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추후 분쟁 예방 등을 위해 **약식 조사 이행 결과를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과정에서 상담자, 조사자 등 **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피해자는 물론 관련자의 신원에 대하여 철저한 비밀유지 필요**
 - '21.10.14. 이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



참고판례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개인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규정,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과 피해근로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취지와 직장 내 성희롱의 특성 등에 비추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조사참여자(이하 '조사참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을 엄격하게 지키고 공정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조사참여자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언동을 공공연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언동으로 말미암아 피해근로자들에게 추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결국 피해근로자등으로 하여금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하는 것조차 단념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조사참여자에게 위와 같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잠깐

피해자가 회사에 신고한 내용 그 자체도 알려서는 안 되나요?

-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엄격하게 지킴으로써 사업장 내 2차 피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비밀이 **신고서에 기재되었는지를 불문하고** 피해근로자등의 동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잠깐

우리 회사의 괴롭힘 실제 사례를 교육에 활용해도 괜찮을까요?

- 괴롭힘 실제 사례를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상황과 그에 대한 회사의 조치를 설명한 내용을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의 방법은 **당사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건이 종결된 후에 진행**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사례 활용 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

- 한편, 조사 결과 사업장의 규제 대상이 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충에 대해서 회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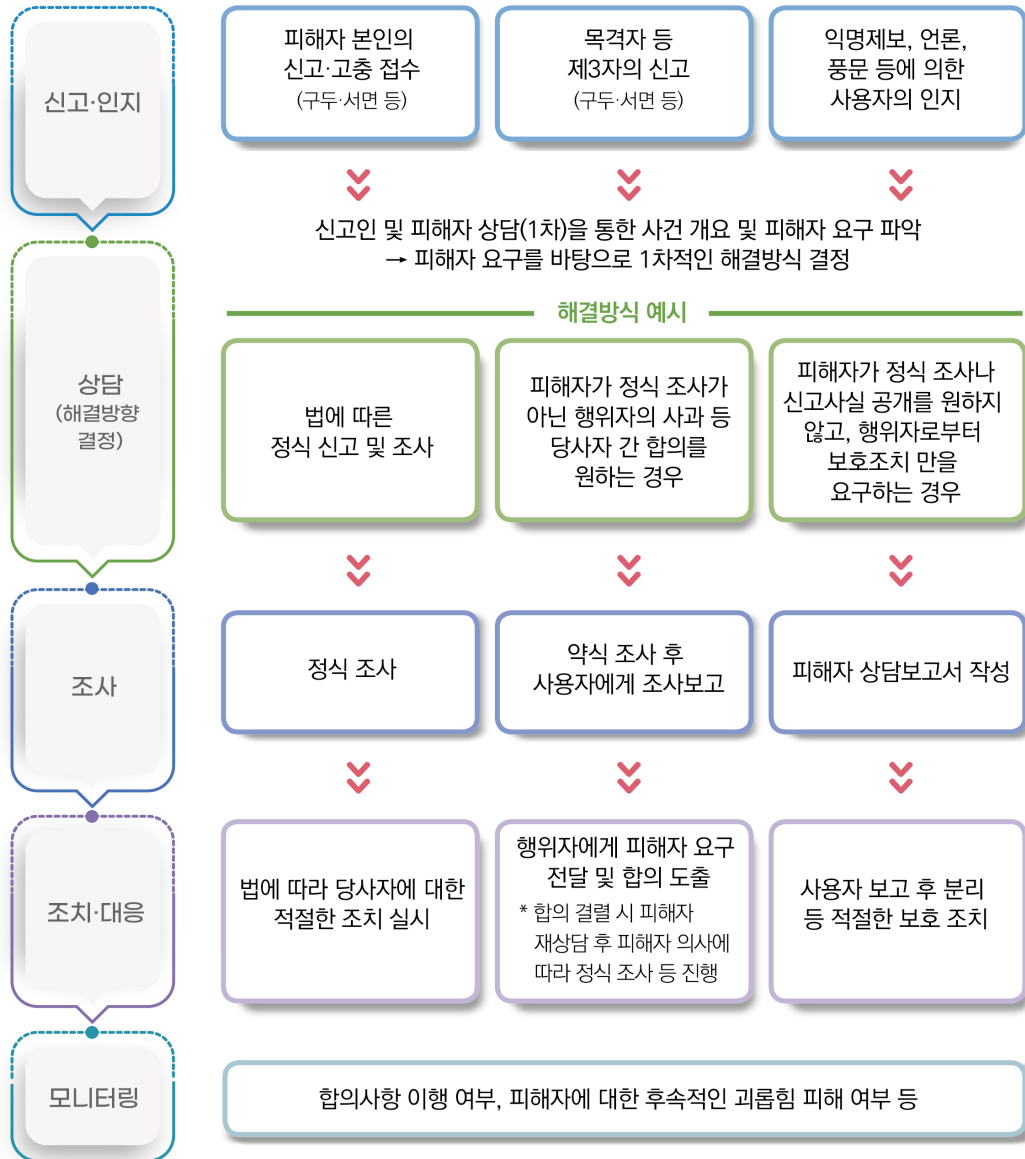
- **신고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고충 완화를 지원**하는 조치(심리상담 등)가 투입되도록 하는 체계가 바람직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직업트라우마센터(안전보건공단)', '정신건강 위기 상담전화(1577-0199)' 프로그램 안내

2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내 처리 담당체계

□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내 절차를 생각해 볼 수 있음



□ 위 절차를 수행할 담당기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사업장의 규모·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임

○ **정식 조사 절차**의 경우 공정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조사위원회 구성**이나 **외부기관 위탁**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잠깐

피해자 본인이 사용자의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 피해자 본인이 사용자의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사용자는 법률에 따른 조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 특히, 피해근로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 대한 불신이 주된 이유인 경우, 상호존중 및 신뢰의 직장문화가 구성되지 못한 경우로서 제3의 조사기관·위원회 등을 구성하거나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

사업장 내 조사·조치 절차별 고려사항

1 사건의 접수

- 법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므로 신고자를 불문하고 **신고가 있는 경우 사건 접수**
 - **신고**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업무 담당조직(담당자)에 직접 하는 경우뿐 아니라 온라인 신고 센터, 이메일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하여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
 - * 신고자의 신원 등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불이익이 없음을 공지하여 신고자의 우려를 미리 해소해주는 것이 바람직
- 신고가 없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업무 담당조직(담당자)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 사건 접수 가능**
 - * 인지의 주체와 정도: 의사표시의 주체나 알게 된 경로 등에 관계 없이 정식 서면의 서류 접수가 아니더라도, 사용자,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고충처리 담당자(담당기관) 등이 직장 내 괴롭힘의 사실 등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면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임



참고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4.7. 선고 2020가합602266 판결

소속 직원들은 탄원서를 작성하고 집단퇴사의사를 밝히는 등 가해 근로자의 복직에 강하게 반발하였다. 탄원서의 주요 내용은, 가해 근로자가 반말이나 무시하는 말투, 위협적인 발언을 일삼으며 상사나 동료의 업무지시와 요청을 무시하고 수시로 자리를 비워 동료 직원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 발생하였는데, 같이 근무하는 직원 몇 명을 따로 불러 유부초밥을 던지거나 직원들의 제지를 무시하고 근무 중인 작업장에 수차례 세제를 뿌리는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가해 근로자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급기야 퇴사를 희망하는 직원이 생길 정도였다는 것이었고, 사용자는 이를 **가해 근로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지**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참고판례

서울행정법원 2022.2.15. 선고 2021구합63501 판결

그에 앞선 퇴사면담에서 “참가인이 지속적으로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고 개인적 심부름을 강요하여 회사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퇴사사유를 밝혔다.

원고는 이를 참가인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지하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라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하였고, 2020.6.22. 참가인 및 ○○ 소속 영업사원 전원(0명)에 대하여 특별면담을 실시하였다.

- 신고 또는 인지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사업장에 접수되는 경우, 지체 없이 대응 담당조직(담당자)이 조사에 임하여야 함
 - 피해자 신고에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신고자는 조사 미실시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조사 미실시가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또한, 평상시 사내 신고절차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등 접근성 제고를 도모하여 사내 신고절차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여야 함
- 소속 부서의 장을 통한 고충처리 접수, 상담·조사는 객관적인 조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



참고판례

대법원 2025.8.14. 선고 2025두33626 판결(상고기각으로 확정)

이 사건 발언은 2020. 8. 6. 원고가 신고인의 업무인 사회복무요원의 제복 착용 문제에 대하여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되어 신고인과 원고가 그 처리를 두고 언쟁하던 대화의 연장선에서 나온 감정적인 발언이라고 보임에도, 원고는 신고인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 고소·고발을 하였고, 그 고소·고발이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선행 고소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후에도 거듭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신고인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은 적법한 권리행사를 넘어 원고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신고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25. 4. 11. 선고 2024누39808 판결)

2 조사

- 사용자의 조사 의무는 사용자에게 자율적 조사 및 조치로 노사의 자율적 분쟁해결과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취지가 있음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취지를 넘어 과도하거나 근거없는 허위신고 또는 반대로 무고죄* 신고 등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음

* 무고죄는 형사사건에서 적용



참고판례

서울중앙지법 2025.12.11. 선고 2024가합50832 판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정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원고 및 신고 상대방들의 사내 지위, 담당 업무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여지가 있는 일부 신고를 제외한 나머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들은 단순히 일상적인 업무 관련 요청, 사용자로서의 정당한 근태 지적 및 이메일을 통한 소통에 불과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원고가 뚜렷한 근거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행위는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 사이의 인화를 저해하는 등으로 피고의 직장 질서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피고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참고판례

서울행정법원 2026.1.29. 선고 2025구합52141 판결

음식점에서 10개월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근로자들과 상당한 불화를 겪고 정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등 동료들과 제대로 융화되지 못한 채, 7차례에 걸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반복하여 유급휴가 등을 부여받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참고판례

서울행정법원 2026.2.12. 선고 2025구합54304 판결

E가 회식자리에서 원고를 따돌리며 배제하려 했다는 제1발언과 사무실에서 F에게 큰 소리로 “걱정하지마, 재 내보낼 거야”라고 말했다는 제2발언은 당시 공간적 상황, 목격자의 부재, 피신고자의 알리바이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자신에 대한 징계를 방어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참가인의 지침 및 취업규칙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정당하게 신고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일 뿐, 허위사실을 지어내어 신고한 근로자까지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다고 하여 위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참고판례

서울고등법원 2025.4.11. 선고 2024누39808 판결

원고의 신고인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은 대화 과정에서 나온 감정적 발언을 발단으로 불기소처분 후에도 거듭하여 여러 차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적법한 권리행사를 넘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신고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비록 신고인이 원고를 한 차례 고소하여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진 바 있으나, 신고인의 고소 횟수와 경위를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이 위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잠깐

우리 사업장은 인사노무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데, 사업장 조사는 안 하면 안 되나요?

-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 인사노무 관리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직장에서 보장하지 못한 엄중한 사안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 또한, 사업장 신고 등을 통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가 사업장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지시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최고경영자)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참고판례

수원지방법원 2017.12.22. 선고 2008가합5314 판결

개인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규정,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과 피해근로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취지와 직장 내 성희롱의 특성 등에 비추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조사참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을 엄격하게 지키고 공정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조사참여자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언동을 공공연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언동으로 말미암아 피해근로자들에게 추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결국 피해근로자등으로 하여금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하는 것조차 단념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조사참여자에게 위와 같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3.8. 선고 2022가단5320016 판결

피고 B가 안전보건관리규정 미작성, 근로자 안전교육 등을 미이행 등으로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단순히 사업주가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에 따른 행정적 제재나 과태료 처분 등을 받았다고 하여 이를 바로 특정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조사에 있어서 **사용자가 조사가 성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조사 과정에 개입하거나 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신고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내역과 관련하여 **조사권자**가 이에 대한 **조사의 범위, 조사의 방법**을 결정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신고자가 생각하는 조사 방법이나 조사 범위와 다른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신고자인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부분 부실조사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음

2-1 상담: 상황파악 및 사건처리방향 결정

- 상담단계에서는 **피해자의 괴롭힘 피해 상황 등을 파악, 사건의 처리방향을 결정**
 - 피해자가 비밀보장을 원하며, 회사에서 공식적인 사건으로의 진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를 고려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상담자는 먼저 상담을 포함한 사건 처리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될 것임을 고지**하고, 피해근로자등(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 아닌 **신고인에게도 또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을 고지**함
 - 상담(조사) 참여자 등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 **노동청으로 진정할 수 있고, 인정 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안내하여 피해자에게 원활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상담 장소 역시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함
- 피해자가 직접 신고한 경우에는 바로 피해자를 상담하나, 목격자 등 **제3자 신고 시에는 신고자를 먼저 상담한 후 피해자 상담**을 권고

○ 상담과정에서는 아래의 내용 확인함

- ▶ 신고인·피해자, 행위자 인적사항 및 당사자 간 관계
- ▶ 신고인 또는 피해자 진술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상황
- ▶ 피해자가 문제해결을 위하여 요구하는 내용
- ▶ 괴롭힘 해결과정에서 우려되는 상황
- ▶ 직접증거 및 정황증거에 관한 정보(목격자, 이메일, 녹음, 메신저 대화내용, 일기, 치료기록 등)

○ 상담자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상담자는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괴롭힘 행위에 관한 내용을 **피해자가 진술할 때 맥락이 맞지 않거나 육하원칙에 따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진술하도록 배려함**
- 특히 **피해자가 받고 있는 고통이나 부정적인 감정**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들여 경청하여야 함. 다만, **상담자는 피해자의 감정에 너무 깊이 동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괴롭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충분히 시간을 들여 파악하여야 함

- 피해가 심각하여 심리상담, 의료지원, 법적지원 등을 고려해야 하는지 파악할 필요성이 있고,
- 정식조사 절차로 진행될 경우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데 피해 정도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임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해결을 위해 마련된 다양한 법·제도와 사내 제도와 절차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함

-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해결 방식에 대하여 선택지를 제공하여,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도와줄 필요**
- 특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극단적 선택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심리상담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99p 참조)

○ 상담 후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따라 다음 절차로 넘어가도록 함으로써 상담을 종결함

○ 정식 조사 전이라도 중요한 조사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함

2-2 약식 조사

- 피해자가 **행위자의 사과, 재발방지약속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하는 경우, 약식 조사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하는 경우 피해자가 얘기하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약식 조사를 통하여 확인**
 - * 피해자가 당사자 간 해결을 원하는 경우, 행위자로 지목된 자가 자신의 행동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회사에서 약식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했다는 전제가 있다면 합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고려
 - **피해자가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보다는 **행위자와의 분리조치만 요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얘기하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약식 조사를 통하여 확인**
- 약식 조사는 **별도 조사자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업장 여건에 따라 **상담자가 직접 할 수도 있음**
 - * 약식조사는 형식을 생략하거나 절차를 생략하기보다는 기초적인 사실관계 조사 의미를 내포하며 법령상 용어는 아님
- 조사자는 약식 조사를 포함한 **사건처리 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철저히 비밀이 유지될 것임을 고지**하고, 피해근로자등(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 아닌 **신고인 또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을 고지함**
- 약식 조사는 **당사자 간 합의나 단순 분리조치 실시를 위한 것이므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추천한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를 **우선 최대한 조속히 완료**
- 조사자는 약식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보고
 - 약식 조사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야 함

- ▶ 피해자와 행위자와의 관계(우위성 판단요소)
- ▶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추천한 참고인이 진술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사건 경위
- ▶ 문제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직접 또는 정황증거)
- ▶ 피해자의 피해 정도
- ▶ 피해자의 요청사항

2-3 정식 조사: 직장 내 괴롭힘 여부 판단

- 상담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식 조사를 통한 해결을 요청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 방향, 조사범위, 조사 대상 등을 결정함
 - **조사의 기간, 조사자, 조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으로 규범화하여 사전에 주지되어 있을 필요**가 있음
 - 취업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신고자가 조사자 또는 조사위원회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는 경우, **신고자의 의사를 수렴하여 이에 반하지 않도록 조사자 또는 조사위원회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사업장 자체 조사시 사용자가 신고자등에게 조사위원회 구성이나 절차, 방법 등 조사과정을 안내하고, 신고자(피해자등)가 객관적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해당자가 있는 경우 조사 과정에서 기피신청 등을 통해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 조사위원회를 통하여 조사하는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접수된 사건을 처리**해야 함
- 당사자가 조사 과정 및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직원들에게 조사가 공정하고 전문적이며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신뢰가 형성되어야 하는 만큼, **조사자의 중립성과 전문적 역량이 중요**하고, **일정 수준의 조사기법 및 대응 전문교육 이수**를 권장
- 통상적으로 사건조사와 처리는 인사팀, 법무팀, 감사팀 등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
 - 사건이 복잡하거나 다양한 당사자가 연계된 경우 등 **조사자 개인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위원회 방식 또는 외부 전문가 참여** 등을 권장함
 - 사안에 따라서는 **노조 대표나 노사협의회** 위원을 **조사에 참여**시키는 것도 고려 가능
- 한편, **대표이사가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 등의 결정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권고함
 - 조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가 조사를 직접 실시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별도 체계를 갖출 필요
 - 이 경우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 외부위탁의 경우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특히, 기관 선정시 신고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중립적으로 조사
 - * 특히,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사건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기관 등이 참여하거나, 조사·보고·결재 과정에서 행위자인 사용자는 배제하는 것이 필요

- 조사자(위원)는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고, 조사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함
 - 피조사자 역시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조사자(위원)가 조사 개시 전에 비밀유지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 조사자는 정식 조사를 포함한 사건 처리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철저히 비밀이 유지될 것임을 고지**하고, 피해근로자등(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 아닌 **신고인에게도 또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을 고지**함
 - 정식 조사참여자 등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노동청에 진정하여 비밀누설이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도 가능함을 안내하여 원활한 진술을 확보할 필요**
- **조사 과정 중**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확인**하여 근무장소 변경, 휴가부여 등 조치를 하여야 함.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됨**
- **대면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조사의 공정성 등을 위해 조사자(위원) **2명이 참여**하는 것을 권고함
 - * 대면조사 시 당사자 인권 보호 등을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배석 제외
- 조사 순서는 **피해자 → 참고인 → 행위자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으나, 사건에 따라 순서를 변동할 필요
 - 부득이한 경우 서면조사 등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나, **당사자 조사는 대면 조사를 원칙으로 함**
-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을 고려하여 관련자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자(위원회)의 의견을 조사보고서에 기술함
 - 조사 과정에서 확인할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사건의 경위
- 피해자, 행위자 인적사항 및 당사자 관계
- 신고 이전 관련 사례 있었거나, 지속·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 조사 과정에서의 피해자 요청사항
- 괴롭힘 인정 후 행위자 조치에 관한 피해자 의견
- 직접증거 및 정황증거(목격자, 이메일, 녹음, 메신저 대화내용, 일기, 치료기록 등) 검증

-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관련,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행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위하여,
 - 상급자 또는 행위자의 **직무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임·직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수 있음

-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또는 다른 참고인이 피해자 외에도 **행위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다른 피해자가 있다고 진술하는 경우**,
 - 그것이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취지인지 확인**
 - 신고하는 취지가 맞는 경우 별건으로 사건을 접수한 후 해당 피해자 상담을 통하여 진행 중인 사건 내용에 추가하여 조사를 원하는지 등의 의사를 확인
 - 만약 **별건을 신고하는 취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행위자의 습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술 속의 또 다른 피해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별건 신고 의사를 확인할 필요**
- 조사가 끝나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보고하여야 함
- 조사자(위원회)가 제출하는 **조사보고서만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사실관계,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판단이 가능하도록 작성되어야 함**
 - 이를 위하여 사건 경위에 **문제된 행위를 최대한 자세히 작성**
- 조사보고서에는 **확보한 직접증거와 정황증거를 첨부하고, 증거의 신뢰성에 대한 조사자(위원회)의 의견을 기술**
 - 또한 문제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 및 그 괴롭힘의 경중 및 적절한 제재 수준 등에 관한** 조사자(위원회)의 의견도 기술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첨부할 필요**

3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 ① 피해자가 괴롭힘 행위의 공개 또는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원하지 않고 **배치전환 등을 통한 행위자와의 분리만을 요청하는 경우**
 - 상담자는 피해자의 분리 요청 및 괴롭힘 행위 등 **상담 내용을 사용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 사용자가 배치전환 등 피해자 보호 조치 실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이 경우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 행위는 중단될 수 있으나, 행위자가 또 다른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일정기간 행위자가 문제되는 행동을 하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음**
 - 상담자가 사업주에게 보고할 때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상담일지를 제출하는 것보다는 **별도 괴롭힘 상담 보고서에 핵심적인 내용만 기술하여 배치전환 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음

- 괴롭힘 상담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야 함

- ▶ 피해자가 진술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 ▶ 피해 정도
- ▶ 피해자의 요청 사항

② 피해자가 행위자의 사과, 재발방지 약속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하는 경우

- 약식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상담자는 피해자의 요구안을 정리하여 행위자에게 전달**
* 요구안의 예: 사과, 재발방지 약속, 행위자가 자원함에 따른 배치전환, 행위자 교육 등
- 행위자가 요구안을 **받아들이면 요구안을 이행하고 사건을 종결**
- 한편, 행위자의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시 회사 차원에서 요구안 이행에 더하여 상담, 코칭, 교육 등을 받도록 결정할** 수도 있음
* 경미하고 반복 방지가 핵심인 사안인 경우 조정과 교육 → 모니터링 → 재발시 재재 강화 등 경로로 설계하여 운영할 수 있음
- 행위자가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합의가 결렬된** 경우에는 상담자는 **피해자를 다시 상담한 후 정식 조사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절차를 진행함

③ 정식 조사를 실시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 및 제5항)
- 따라서, **정식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인정 여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행위자에 대한 징계, 재발방지에 관한 권고사항 등을 결정**해야 함
- 이상적으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를 확인하고, 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여 권고하고,
- **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 등 다른 기구에서 실제 조치를 의결**하는 절차로 운영할 수 있으나,
- **사업장 규모 또는 특성에 따라 이를 하나로 통합**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직접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결정할 수도 있음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해 고충처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고충심의위원회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도 활용**할 수 있음

참고

1.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가이드라인의 고충심의위원회 구성(안)

- ▶ 심의위원회는 인사담당임원, 노동조합 대표자, 고충담당자, 외부기관 전문가로 구성하며, 이 중 하나의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함

2.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의 고충심의위원회 구성(안)

- ▶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전문가들로 위촉

-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행위자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격한 징계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행위자의 근무장소 변경 등을 통해 피해자와 분리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병행해야 함
- 한편, 행위자의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시 징계 조치에 더하여 상담, 코칭, 교육 등을 받도록 결정할 수도 있음



참고판례

대법원 2017.3.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 (참고) 양정의 경우 지속성·반복성, 고의성, 공개성, 피해 정도, 업무관련성 일탈 정도에 비례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임



참고판례

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보아 어떠한 성희롱 행위가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매우 심하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사업주가 사용자책임으로 피해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성희롱 행위자가 징계해고되지 않고 같은 직장에서도 계속 근무하는 것이 성희롱 피해 근로자들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내린 징계해고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 **대표이사가 행위자로 신고된 사건**의 경우 **감사는 조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등을 통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고함
 - * 공공기관의 경우 이사장이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그 조사 결과를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의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 *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배치하는 행위는 사실상 보호조치를 빙자한 강제적 근무장소 변경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4항에 따른 적절한 보호조치라고 보기 어려움
- 조치 내용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 * 당사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한의 적정수준의 결과 통보**가 바람직
 - ** 신고내용, 적용법조항, 조사 결과와 판단 사유와 근거 개요, 조치 내용 등

4 모니터링

- **사건 종결 후 일정 기간(예: 2년) 동안 반기별로 해당 행위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재발 여부, 보복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5 불리한 처우 금지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였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됨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
 - 사업장 내 해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처벌 규정을 둔 것임



참고판례

청주지방법원 2022.4.13. 선고 2021노438(대법원 확정)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기준

사업주의 조치가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한’ 것인지 여부는 그러한 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 제기 등과 근접한 시기에 있었는지, 조치를 한 경위와 과정, 조치를 하면서 사업주가 내세운 사유가 피해근로자 등의 문제 제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인지, 피해근로자 등의 행위로 인한 타인의 권리나 이익 침해 정도와 사업주의 조치로 피해근로자 등이 입은 불이익 정도, 그러한 조치가 종전 관행이나 동종 사안과 비교하여 이례적이거나 차별적인 취급인지 여부, 사업주의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 등이 구제신청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의 취지 참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판결이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하는 경우에도 그 기준으로 삼을 만하다). 여기서 불리한 ‘조치’에는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만이 아니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등이 포함된다.

〈 중 략 〉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의 목적과 그 입법취지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전보조치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전보조치가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의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를 완료한 이후의 조치라고 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6항에 예시한 것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 사용자의 조치가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한 것인지 여부는 아래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불리한 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 제기 등과 근접한 시기에 있었는지**
 - 불리한 조치를 한 **경위와 과정**, 불리한 조치를 하면서 내세운 **사유가 피해근로자등의 문제 제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인지**
 - 피해근로자등의 행위로 인한 **타인의 권리나 이익 침해 정도**와 불리한 조치로 **피해근로자등이 입은 불이익 정도**
 - 불리한 조치가 **종전 관행이나 동종 사안과 비교하여 이례적이거나 차별적인 취급인지 여부**
 - 불리한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등이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경과 등**

 참고판례 |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사업주가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그러나 사업주의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나 그와 관련된 문제 제기와 무관하다면 위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또한 사업주의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과 별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위 조항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사업주의 조치가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한 것인지 여부는 불리한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 제기 등과 근접한 시기에 있었는지, 불리한 조치를 한 경위와 과정, 불리한 조치를 하면서 사업주가 내세운 사유가 피해근로자등의 문제 제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인지, 피해근로자등의 행위로 인한 타인의 권리나 이익 침해 정도와 불리한 조치로 피해근로자등이 입은 불이익 정도, 불리한 조치가 종전 관행이나 동종 사안과 비교하여 이례적이거나 차별적인 취급인지 여부, 불리한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등이 구제신청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판결이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하는 경우에도 참고 가능

 참고판례 | 대법원 2022.7.22. 2022도4925 상고기각 결정(창주지방법원 2022.4.13. 2021노438 판결)

여기서 불리한 ‘조치’에는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만이 아니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등이 포함된다.

- 최근 직장 내 성희롱 관련 판결에서 피해자의 문제해결을 도와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 등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



참고판례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피해근로자등이 구제절차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동료 근로자의 조언 등 도움을 받는 경우에 사업주가 도움을 주는 근로자에게 적극적으로 차별적인 대우를 하거나 부당한 징계처분 등을 한다면, 피해근로자등도 인격적 이익을 침해받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성희롱의 특수성에 비추어 피해근로자등과 그에게 도움을 준 동료 근로자는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갖는 밀접한 관계에 있을 수 있다. 피해근로자등은 동료 근로자가 자기 때문에 불리한 조치를 당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밖의 다른 근로자들도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어 피해근로자등에게 도움을 주거나 그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이러한 상태가 심화되면 피해근로자등은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직장 내에서 사실상 고립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피해근로자등은 동료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불리한 조치를 보고 구제절차 이용을 포기하거나 단념하라는 압박으로 느껴 성희롱 피해에 대해 이의하거나 구제절차를 밟는 것을 주저할 수 있다. 사업주가 동료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를 함으로써 피해근로자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사정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피해근로자등을 도와준 동료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징계처분이나 불이익 조치가 사업주가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문제될 수 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남녀고용평등법령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근로환경 개선책을 실시하고, 피해근로자등이 후속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근로여건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사업주가 피해근로자등을 도와준 동료 근로자에게 부당한 징계처분 등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가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판례

불이익 처우 관련 판단 사례

-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일련의 조치 과정에 있어 배려하지 않은 채, 인력부족의 사유를 들어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한 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22. 7. 12.자 2022도4925 결정)
-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인정되어 징계를 받은 어린이집원장을 다른 구청 산하 어린이집으로 전보 조치하기 위하여 다른 구청과 협의하였으나, 다른 구청에서 해당 어린이집원장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종래의 어린이집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인 보육교사의 양해를 구해 다른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은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고 본 사례(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가단235507 판결)
- 경영총괄이사로 재직 중인 피해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회부하고 징계하고 처분을 한 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사례(수원 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2고정710 판결)
- 사업장에서 이메일 전송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2. 9. 21. 선고 2022고단271 판결)
- 조합 내 모출납업무 등을 담당한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출하자, 조합 이사장은 자신의 며느리를 상대로 괴롭힘 진정서를 제출한 시점과 인접한 시기에 전보발령을 했고, 전보발령전에 해당 근로자를 불러 질책도 하였으며, 인사규정에 정한 원칙도 지키지 않은 채 본점에 전보된 지 6개월도 안된 해당 근로자를 협의도 없이 전보발령하였음. 가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전보 사업장은 직원들 사이에서 유배지로 불린 바 있음. 이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함을 판단하며, 해당 이사장 벌금 700만원, 조합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23. 9. 6. 선고 2022고단8462 판결)

6 비밀 누설 금지

- 조사자, 조사 내용 보고받은 자, 조사 과정 참여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누설 금지
 - 다만, 사용자에게 보고, 관계 기관 요청에 따른 정보제공은 제외
- 또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과정에서 상담자, 조사자 등 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피해자는 물론 관련자의 신원에 대하여 철저한 비밀유지 필요
 - 조사보고서 공개는 비밀유지 의무, 개인정보보호 의무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주 보고와 사실 판단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공개할 수 있을 것임



참고판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 10. 4.자 2023과6 결정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의 의미

위반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서 조사받은 사람은 조사과정에서 그와 같은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이 정하는 ‘그 밖에 조사에 참여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법문언상 그와 같이 불만한 뚜렷한 근거는 없는 점, ② 위반자가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위반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로 지목된 다른 사람들의 조사결과와 위 다른 사람들과 참고인들의 진술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바 위반자가 유출한 보고서는 위반자가 스스로 경험하여 알고 있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내용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반자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7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의 계기로 활용

- 사건 종결 후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 신원은 가리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상황과 그에 대한 회사의 조치를 자세히 설명한 내용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한 사안을 미리 방지하도록 할 필요
 - 다만, 당사자 신원을 가려도 피해자 등이 특정되어 2차 피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피해근로자의 의사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사건 처리를 계기로 사업장 내 조직문화, 구성원 간 분위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
- 한편, 해당 사안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고충은 해소된 것이 아니므로, 상담을 다시 진행하여 고충해소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할 필요

VI

참 고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예방을 위한 지원
2.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 및 유형별 사례
3.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사례
4. 「직장 내 성희롱」과의 비교
5. 사업장 자체 조직문화 진단을 위한 근무환경 설문조사표
6.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표준안



참고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예방을 위한 지원

법률 및 심리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관련 기초 법·제도 상담 서비스 제공

심리상담(근로복지넷, EAP)

- 근로자지원프로그램(☎ 02-2674-0329)
 -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복지넷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상담을 신청한 자(1인당 연 최대 7회)

심리상담(안전보건공단)

- 직업트라우마센터(☎ 1588-6497)
 - 임상심리사 등 전문인력이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한 정신적 외상을 겪은 노동자에게 심리교육, 검사, 상담, 사후관리 제공
 - 사업장 또는 노동자 개인이 직접 상담 신청 또는 해당 지역 안전보건공단에 신청(비용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전액 지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관련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자료(리플릿·포스터·매뉴얼)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동영상
(www.moel.go.kr, 유튜브 고용노동부 계정 →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검색)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교육 지원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교육 관련 전문강사 양성·확보
 -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교육’을 사업장에 무료 실시(온·오프라인)
(☎ 031-760-7772, www.keli.kr)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Employee Assistance Program)

*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EAP 활용 가능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이란?

- ▶ 세계 EAP협회에서는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조직과 근로자의 건강, 부부 및 가족생활문제, 법률 및 재정 문제, 알코올·약물 문제, 정서적 문제, 직무 스트레스 등 업무성과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사업장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규정



근로복지공단 제공 근로자지원프로그램(위탁수행기관: <사>한국EAP협회)

- ▶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 등 해결을 위해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으로 신청을 받아 무료 온라인·오프라인 EA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가 지원대상이며,
 - 근로복지넷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상담신청하면 온·오프라인 상담 가능
 - 온라인상담은 게시판상담, 모바일상담, 전화상담으로 구성
 - 오프라인상담은 근로자상담(1:1대면), 기업상담(개별 및 집단), 스트레스 힐링 프로그램, 조직스트레스 측정 등 실시

직업트라우마센터(안전보건공단) 내담사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를 고민할만큼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인이 직업트라우마센터를 알려준 덕에 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며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처럼 직업트라우마센터를 통해 일상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직업적 트라우마란?

- ▶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포함한 산업재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혹은 이에 상응하는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목격한 후 발생하는 심리적 외상(trauma)



직업트라우마센터란?

- ▶ 임상심리사 등 심리 및 정신보건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과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갖추고, 사고 이후 트라우마에 따른 심리교육·검사·상담, 사후관리 등 제공
 - * 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 관련 국가면허·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상담 실무경력자
- ▶ 직업적 트라우마 사건·사고 발생 사업장에는 심리상담사 등을 파견해 전 직원의 심리 안정화를 위한 집단 트라우마 교육도 제공
- ▶ 사업장 또는 노동자 개인이 센터 또는 해당 지역 안전보건공단에 신청
 - * 문의전화: 1588-6497 (가까운 센터 확인, 상담예약 가능)
- ▶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고, 비용은 공단에서 전액 지원

참고 2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 및 유형별 사례

□ 직장 내 괴롭힘은 그 양태가 매우 다양해서 모든 행위 유형을 열거·규정할 수 없으나

○ KICQ(Korea Interpersonal Conflict Questionnaire) 등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진단항목, 일본·호주 등 해외 매뉴얼 등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포섭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음

-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 ▶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 ▶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 ▶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 ▶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 흡연 / 회식 참여를 강요함
- ▶ 집단 따돌림
- ▶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 위에 예시된 해당 행위들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금지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당 행위가 실제 발생하면 **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함**

○ 사업장에서는 각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어떤 행위를 징계 등으로 규제할 것인지**, 규제대상이 되는 행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를 어떻게 할지** 등을 명확히 할 필요



상정할 수 있는 구체적 예시

* 아래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유사한 사례의 경우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 ▶ 업무상 실수 지적을 넘어선 조롱, 폭언
- ▶ 성역할적, 성차별적 발언을 통한 괴롭힘
 - 예 응대, 정리, 청소 등은 여자가 해야 하고, 힘 쓰는 일은 남자가 해야 한다, 된장녀, 머슴, 이런 건 남자(여자)가 해야지
 - 옷차림 지적, 뚱뚱하다는 외모 관련 지적이나 농담
 - 예 웃이 게이 같다, 화장 안 하나, 이렇게 뚱뚱해서 결혼 어떻게 하나
- ▶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제대로 못한다고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발언
- ▶ 신체적 위협이나 폭력 (예)물건 던지기, 옷이나 가방 등을 잡고 흔드는 행위, 폭력행사 시늉 등
-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 흡연, 회식 참여, 모임 참여 강요 등
- ▶ 상호 존중 없는 대화 태도나 호칭 (예)야, 막내야, 아가씨 등
- ▶ 부서이동이나 퇴사 강요 및 종용 (예)기피 업무 배치 후, 고충을 호소하자 퇴사를 종용, 회사방침에 항의한 이후 이어진 전보발령
- ▶ 면벽 근무 지시를 포함한 부당한 인사 지시 등
- ▶ 휴가나 병가, 육아휴직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 연차휴가 승인을 이유로 구체적 병명 등 사생활 보고 강요
 -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일부 불허가와 일방적인 근무장소 변경
 - (육아·출산 등과 관련) 일을 못한다, 휴직을 꼭 해야겠냐 등 무시, 비난, 심리적 부담감을 주는 말
- ▶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달성을 방해
- ▶ 훈련, 승진, 보상에서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 ▶ 업무 미부여, 단순업무 부여, 다른 동료 대비 과도한 업무부여 등
- ▶ 중요 업무정보를 알려주지 않거나 의사결정 제외 (예)위험작업 시 주의사항·안전장비 미전달
- ▶ 근로계약상의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적인 용무지시
 - 병원 원장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병원의 식사준비까지 요구받은 조리사
 - 대학원 논문 대신 작성, 회사와 관련 없는 생활용품 구매 심부름 등
- ▶ 뒷담화, 험담, 뒷세 등을 활용한 집단 따돌림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특히, 남녀관계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
- ▶ 근무 또는 휴식시간을 지나치게 감시
 - 영업사원에게 지급된 태블릿PC로 위치추적, 상담내용 확인 등 체크
 - 화장실 이용 횟수·시간 포함된 근무대장을 적게하고 공개장소에 비치



직장 내 괴롭힘 유형별 사례

- 직장 내 괴롭힘은 그 양태가 매우 다양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직장 내 괴롭힘을 볼 수 있는 행위를 일률적으로 열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 언론 보도, 판례 등 우리나라에서 실제 발생한 사례를 토대로 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판단 유형별로 예시하면 아래와 같음
 - ➔ 해당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개별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 행위내용,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추가 판단할 필요
 - * 아래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 ** 아래 사례는 개별사건의 법원 판단이므로 유사한 사례인 경우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 *** 법적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해당 행위의 적절성이나 별도의 예방·관리 조치 필요성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닌 점에 유의

I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

1.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부여

1 과도한 업무 부여

인정 정관상 이사회 결의가 필요함에도 결의 없이, 피해자 동의 없이 총무업무까지 수행하라고 지시 / 본래 업무(경리 업무)와 관련이 없는 매점 현황 조사(그 조사 범위가 지나치게 과다) 지시 (대전지법 2022.6.17. 2021나125431)

불인정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2019년 4월 8일 차액 조서 관련 4차례 재결재 지시는 단시간 내 실시간 수정·지시를 위한 업무 범위 내의 행위인 점, 2020년 4월 24일 대체인력 공고 완료 및 신체적 이유 부재 상황에서 이루어진 3차례의 병가 변경 신청 반려 역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퇴직금 지연이자 부담 제안은 피고 C가 아닌 학교 원장의 제안인 데다 원고의 거부로 실현되지 않은 점, 2021년 1월 11일 업무분장 및 인수인계 과정에서 원고에게 인쇄실 업무가 추가되거나 기존 업무가 일부 지시된 것 또한 업무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처사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가 직장에서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대구지법 2022.6.15. 2021나314644)



2 기피 업무 부여

불인정 B조 시간대를 제외한 근무시간은 A조 시간대(05:00부터 14:00)와 E조 시간대(12:30부터 21:00까지)가 있다. E조 시간대는 상당 부분 B조 시간대와 중첩되고 있고, B조 시간대에 근무를 하는 경우 A조 시간대에 비해 계약직 직원의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으므로, B조 시간대의 세탁물 수거 업무가 다른 시간대에 비해 1회 더 많다고 하더라도, B조 시간대의 업무가 A조 시간대의 업무에 비해 객관적으로 과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부산지법 2026.1.22. 2024나49803, (부산지법2024.4.23. 2023가소568249)

2.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1 근로계약서 미명시 업무 부여/ 허드렛일 부여

인정 2019.4.15. 인사발령 이후 2020.2.7.(피해자에게 해고 통지)까지 CAD 그리기 연습* 지시(해당 기간 중 CAD 그리기 연습 지시 외 부여받은 업무 없음) → 피해자의 지위나 직급에 상응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움, 단순한 견습 작업에 불과(수원지법 2024.7.3. 2021가합13397)

* 행위자는 피해자가 현장업무를 거부하고 내근직을 원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CAD 그리기 연습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

인정 20년 넘게 사무직(금융상품판매 및 주식매매영업)으로 근무한 50대인 피해자에게 3년 4개월동안 독방에서 본연 업무와 무관한 단순 육체노동을 지시(서울중앙지법 2025.1.14. 2023가단5375402)

2 업무 미부여

인정 징계 해고된 피해자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후 화해를 통해 복직 후, 다른 직원이 피해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업무 미부여, '리스크대응팀장'이란 보직 부여 + 형식적인 보직, 사무실·내선번호 미제공, 업무회의·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 배제(전주지법 2023.8.22. 2022가단36846)

불인정 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원고에게 팀실적 관리와 같은 형식적인 업무나 지역 캠페인 같은 기본업무 외에 실질적인 업무 미부여 → 휴직 전 담당하던 업무에 비하여 다소 줄어든 업무를 맡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업무분장 조정이 오로지 원고를 괴롭히거나 위법하게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서울중앙지방법원2021. 10. 8. 선고2020가단 5296577)

3. 부당한 업무 지시

1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 업무지시

인정 부당한 연장 근로 강요 - ‘너 월급 깎아도 돼? 너 인턴이지? 일하는 사람 아니지? 일도 하겠지만 배우러 온 사람이잖아. 10시간 원래 계약대로 일하겠다고 하면 내가 니를 가르쳐줄 이유가 있어? 내가 가진 메리트가 머냐고.’ 발언 포함(서울서부지법 2025.5.22. 2023나 49964)

- 불인정** ① 퇴근 시간 이후에 피고가 회식 준비를 지시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당일 저녁에 회식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회식 장소인 식당의 배치도를 확인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메시지의 내용, 발송 경위 및 시간 등을 고려해 볼 때 사회통념상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려움.
- ② 개인 휴가 중이었던 원고에게 피고가 카카오톡으로 업무 관련 확인을 요구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D사업단의 거래처에서 D사업단에 보낸 직원들의 휴가계획을 조속히 확정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사실, 일부 직원들의 경우 휴가 일정이 그 다음 주였던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업무상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됨.
- ③ 피고가 휴일에 원고에게 보이스톡으로 연락하여 숙소 호텔 카페로 불러 업무를 지시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가 D사업단 사업운영과장으로부터 다음 날 신입장관이 현장을 방문한다는 정보보고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사업운영과소속인 원고에게 급히 연락하여 업무지시할 필요성이 인정됨.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5.6.25. 2024가단63942)

불인정 1년 3개월동안 업무시간 이외에 13차례 카카오톡 업무지시는 장기간에 걸쳐 산발적으로 있었음. 아울러 13차례 업무지시 중 일부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출근시간 외에 반드시 업무를 마칠 것을 종용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임(서울북부지법 2025.5.20. 2024과81)

불인정 출근시간을 확인하기 어렵게 되자 카카오톡으로 ‘오늘 오프인가요?’라고 출근 확인하려는 취지에서 한 행동(부산지법 2024.4.9. 2023가단301619)

불인정 2019.7.16. 행위자가 피해자 D, E에게 근무시간 이외(오전 6:26)에 카카오톡을 통해 업무지시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며 압박(‘혁이 아니라 바로 보도자료 준비해서 내겠습니다 해야죠’)한 행위 → 보도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당 기사를 언급하며 보도 자료의 준비를 독려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메시지를 보낸 시간이 근무시간 전이기는 하나 인터넷 기사의 특수성, 신속한 보도 자료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괴롭힘 불인정(대전지법 2021.11.19. 2020구합105691)



2 업무보고(일지) 작성 지시

인정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업무지시는 2020. 7.경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 B은 2020. 7.경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나 전자결재시스템상 지시사항을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업무를 지시한 당일 결과물을 곧바로 제출하도록 하기도 하였고, 제출 기한이 동일한 날짜인 업무의 내용도 대부분 단시간 내에 처리하기는 어려운 것들로 보인다. 한편 피고 B이 2022. 5. 10. 작성한 업무일지는 해당 일자에 수행한 업무의 개요만을 기재하도록 양식이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작성한 업무일지는 시간을 단위로 이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는 이후로도 시간대별로 업무일지를 작성하면서 30분 내지 1시간 30분 단위로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역을 기재하였다. 그밖에도 원고는 여러 차례 업무 이행 약속서, 시말서 등을 작성하여 G, 피고 B 등에게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위와 같이 피고 B이 원고에게 지시한 업무의 내용과 양, 업무수행의 기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 수행 능력이 다소 부족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는 주된 업무 이외에도 부수적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많아 업무상의 부담이 과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제주지법 2025.2.6. 2023가합11053)

불인정 업무 특성상 시시각각 상황을 공유하며 유연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매일의 업무를 사후에 정리한 업무일지를 다음날 제출하여 왔던 상황에서, 행위자가 2019.6.17.부터 7.31.까지 피해자에게만 업무계획을 시간대별로 작성하여 미리 보고할 것을 지시 → 관리자가 소속 직원들의 업무를 파악하고 있을 필요성, 업무별로 시간대를 구분하는 단위가 1~3.5시간 정도였던 점 등에 비추어 사전에 시간대별 업무를 계획하여 작성, 보고하는 것이 업무상 명백히 불필요하거나 수행 불가능한 것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수원지법 안양지원 2023.3.8. 2021가단123961)

불인정 상급자인B가 원고A에게 출장보고를 하지 않는 것에 관해 질책을 한 것 자체는 근무의 수행 과정 및 내용에 관해 나무라고 개선을 지시하는 것으로 B가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중간관리자인 과장의 지위에서 할 수 있는 행위였다고 할 것임. 또한 당시 원고는 지시에 따라 출장을 다녀온 이후 담당 ○○○에게 별거 없었다고만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A가 이후에 제출한 출장보고는 작성일 및 작성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등 보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말을 전해 들은 B로서는 그러한 업무수행 내용과 과정 등에 관해 충분히 질책할 만했다고 보이므로, B가 이에 관해 잘못을 지적하며 질책한 것 자체가 사적인 복수심 등의 감정을 실현하기 위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였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B는 A가 출장보고를 하지 않은 것에 관해 질책하는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녹음을 지을 것을 요구한 것 등은 부적절한 언행이고, 이와 관련하여 B는 경고 처분을 받기도 함
(서울중앙지법2022. 1. 19. 2021나42155)

3 시말서(사유서) 작성 지시

인정 피해자가 지게차 작동미숙으로 화물손상 사고를 발생, 피해자에게 반성문 제출 요구 ('지금까지 나에게 했던 행동들, 행위들에 대해서 종이에 써서 가지고 와라. 마지막에는 한번 더 어길 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말도 꼭 들어가고'라고 발언) → 화물손상 사고를 발단으로 행위자가 개인적으로 지시한 반성문에 해당하고 행위자가 정당한 징계 권한이 없이 그간의 잘못에 관한 반성문을 스스로 작성하게 한 행위(서울행법 2022구합75488)

인정 행위자의 경위서 작성 요구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회에 걸쳐 '관행으로 인식하여 외부공문을 결재없이 처리 후 사후 결재를 받았으며, 앞으로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는 내용의 경위서 및 보고서를 행위자에게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이 없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기억과 경험에 반하는 내용의 경위서·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반복하여 요구(서울중앙지법 2021고정2353)

불인정 피고가 원고에게 시말서와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한 원고에게 경고장을 송부하고, 이를 오피스텔 게시판, 엘리베이터 등에 게시한 것은 원고의 업무 불이행과 다른 직원들에 대한 비협조적 태도, 폭언, 고성 등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에는 원고의 상당한 책임이 있음(대전지법 2023나201025)

불인정 농약 살포작업을 마치고 대기실에서 컴퓨터로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근무 중 휴식을 취했다는 이유로 사유서 작성을 요구, 피해자가 휴식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CCTV로 확인하자고 하였으나 행위자는 피해자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사유서 작성을 요구 → 피해자가 작성한 작업일지에 따르면 12:30~16:00 피해자 업무는 교통광장 및 어린이 놀이터 잡초방제였던 점, 이처럼 작업일지(업무계획)에 따른 일정과 피해자가 휴게실에 있는 상황이 일치하지 않아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게 된 것인 점, 피해자로서는 사유서에 그가 주장하는 경위를 설명하여 소명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함께 사유서를 제출한 직원들 중 그 내용을 근거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직원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무시간 중 대기실에 있는 것에 대하여 사유서 제출을 지시한 것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움(수원지법 안양지원 2023.3.8. 2021가단123961)

4 결재, 휴가, 병가 반려

인정 원고는 피해자 및 일부 직원들의 문서를 제때 결재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 및 일부 직원들이 요청을 하여야만 결재를 하는 등 결재를 고의로 지연시킨 점, 상급자의 결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하급자는 업무를 제때 진행할 수 없게 되어 나중에 급박하게 업무를 처리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점, 원고는 피해자 및 일부 직원들의 문서에 대해서만 결재를 늦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결재 지연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해자 및 일부 직원의 결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서울행법 2024.2.2. 2022구합85560)



불인정 피고 C이 2020. 4. 24. 원고의 병가신청을 3차례 반려한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당초 병가를 신청한 일정에 맞추어 피고 학교 측이 이미 대체인력 공고를 함에 따라 원고의 변경 신청을 반려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변경 신청의 이유가 당초 신청한 병가 기간에 공휴일이 있어서라는 것인바, 꼭 변경된 날짜에 병가를 사용하여야 할 신체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그 반려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대구지법 2022.6.15. 2021나 314644)

불인정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마이너스 연차휴가제도를 관행적으로 사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위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회사에게 원고의 마이너스 연차휴가신청을 승인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의 위 휴가신청을 반려한 것을 특별히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수원지법 2024.7.3. 2021가합13397)

불인정 E의 재택근무 시행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배우자가 근무하는 건물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택근무 의무 대상 또는 권장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피고 D, B에게 연락한 시점은 회사의 근무 시작 시간 이전이어서 위 피고들로서는 회사의 인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원고의 출근 요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원고의 출근으로 인하여 코로나가 전파될 경우 원고가 심한 사회적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팀장인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출근한 것이어서 설령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오히려 원고에 비하여 위 피고가 받을 비난의 정도가 더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재택근무를 위하여는 회사에 있는 업무용 노트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도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B이 원고에게 회사에 출근하라는 지시한 취지는 원고가 재택근무 대상자임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일단 회사에 출근하여 회사에 재택근무를 신청하고 재택근무에 필수적인 업무용 노트북 등을 지참하여 귀가하라는 취지로 보이고, 그와 같은 취지 자체가 부당하다거나 원고에 대한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296577)

불인정 원고가 피고에게 소방호스 동파방지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인 U, V의 출장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V은 서울에 집이 있어 출장을 가려는 것이 아니냐, 서울에 집이 있으니 출장비에서 숙박비를 제외하고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유를 들며 결재하지 않다가 2019.11.29.에야 결재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출장 및 비용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은 G센터 센터장인 피고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든 사유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거나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해당 출장 결재를 특별히 단시간 내에 처리하여야 했던 사정 내지 당시 출장 결재에 3일가량 소요된 것이 지나치게 장기간이라고 불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12237)

5 기타

인정 '직장상사 예절 문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배부하여 통상의 조직에서 업무상 필요한 위계질서를 초월한 상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도 따라야 한다고 지시(광주지법 2025.4.15. 2023가단552584)

인정 행위자가 현장 근로자들에게 샤워를 17시 이후에 하라고 통보하여 땀과 농약이 묻었음에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샤워를 할 수 있게 한 행위 및 사물함 미배정 행위(수원지법 안양지원 2023.3.8. 2021가단123961)

인정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가 직무집행정지 및 대표이사로 선임된 주주총회 결의가 취소된 것과 관련하여 경리를 담당하던 B에게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자를 확인하라고 지시(대전지법2022. 6. 17. 선고 2021나125431)

인정 3회에 걸쳐 입학관리팀 예산으로 목적 외 사용을 위한 상품권을 구입하여 행위자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하고, 학내 행사가 있을 때 학교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이용하여 행위자의 개인적인 간식을 구입할 것을 지시(수원지법 2021가단 531133)

인정 평가위원인 피해자에게 '중증장애인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대상자 G에 대해) 재평가를 받게 할 것을 지시하여, 2018학년도 C대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지원한 시각장애 1급인 G가 합격하지 못하게 한 행위(수원지법 2021가단 531133)

인정 피해자만 전 직원 업무단독방에 출퇴근 시간 보고하도록 지시(서울서부지법 2025.5.22. 2023나49964)

인정 피해자에게 업무 수정·지시를 하며 반복적으로 하대하는 말투를 사용하고 다른 직원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발언을 한 행위(광주지법 2023나71918)

불인정 피고B의 행위는, G병동에서 근무하는 신입 간호사와 업무내용 전달방식으로 이견이 발생하자 원고가 다른 경력이 많은 간호사에게 이를 지적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고B이 원고에게 '(신입 간호사는) 안고쳐지니까 니가 생각을 바꿔라'라고 말한 것인데, 피고B이 이와 같이 말한 것은 G병동의 수간호사로서 위 병동 내에서 함께 근무하는 간호사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기 어렵다.(부산지법 2024나49513)

불인정 학생을 어느 강사에게 배정할 것인지, 강의장소를 어디에서 할 것인지는 근로자의 지위를 주장하는 원고의 권한이 아니라 사용자인 피고나 학원 원장의 권한이고(스터디카페에서 강의를 하도록 한 이유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사원과 마주치지 말라며 지시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코로나로 강의실이 부족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지시가 다소 부적절하다 할지라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다른 사유들도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사용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서울중앙지법 2022나32964)



4.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시

1 사적 용무, 사적 심부름 지시

인정 사회복지사 자격증 과정의 과제 대리 제출 및 시험 대리 응시 부탁 (광주지법 2025.9.17. 2024가단558701 [미확정])

인정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인터넷 교육의 시험과 수강을 다른 직원에게 대신 수행하도록 지시, 부모님이 치킨집을 운영하는 하급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출근 전에 치킨을 튀겨오라고 말하고 날짜를 지정하여 재차 요구(그 직원은 2020.11.15.경 치킨을 사와 행위자에게 제공)(대전지법 2024.4.17. 2022구합105893)

인정 출장일에 행위자 짐 옮기기 등 사적 심부름, 휴일 또는 근로시간 외 도시락 배달 등 사적 심부름(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5.6.25. 2024가단63942)

인정 퇴근할 때 하급 직원에게 여러 차례 자신의 차가 운영하는 카페까지 차를 태워다 달라고 요구(대전지법 2024.4.17. 2022구합105893)

인정 팀장A가 팀원B로 하여금 울릉도 출장 업무를 하면서 공무와 관련이 없는 A가족들의 울릉도 여행을 위한 운전 및 안내를 하도록 함(대구지법 영덕지원 울진군법원 2024. 4. 12. 선고2022가소10543)

인정 경비원에게 본래 업무가 아닌 세차 업무까지 지시(서울서부지법 2023나 44389)

인정 피해자의 개인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12237)

인정 피해자를 인천 강화의 개인 별장에서 청소를 시킨 행위(서울동부지법 2022가단124247)

불인정 신고인은 기획성과부의 서무로서 부서 명의로 화환을 보내는 행위와 같은 경우 신고인이 맡고 있는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원고가 화환을 보낼것을 지시할 당시 원고에게 사적인 목적이 있었고, 신고인에게 피고 노조위원장이 입원한 병원조차 알려주지 않은 채 지시한 사정 등은 있으나, 한편 원고가 속한 기획성과부의 업무성격을 고려하면 원고 개인의 입장에서 피고 노조위원장과 피고 노조위원장의 관계 유지가 어느 정도 필요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없지 않은 점, 원고가 신고인에게 이와 같은 사적인 용무를 반복적으로 지시한 것도 아닌 점, 신고인도 당시 피고 노동조합원의 일원이었고 피고 노조위원장과 안면이 있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내용의 원고의 지시행위가 객관적으로 신고인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광주지법 목포지원 2025.11.4. 2025가합10102 [미확정])

II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1.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

1 폭력

인정 피해자에게 회초리를 맞아야 한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를 칠 회초리로 쓸 나뭇가지를 구해오도록 하고, 피해자가 구해온 나뭇가지를 부러뜨려 부러진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폭행하였으며,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 행위(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인정 피고는 2023. 9. 5. 회식자리에서 원고가 다른 직원의 술잔에 물을 따라주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에 들고 있던 유리컵을 원고를 향하여 던졌다. 이와 같이 피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원고에게 반말, 고성으로 화를 내거나 질책을 하였으며 폭력적인 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고,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5.6.25. 2024가단63942)

2 신체적 접촉

인정 피고 회사의 직원들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진정에 관한 내부 조사 과정에서 피고 C가 피고 회사 광주영업소의 전 직원들에게 볼을 꼬집거나 뒤통수를 치고 지나가는 등의 스킨십을 종종 하였으나, 받아들이기에 따라 폭력으로 느껴질 수 있거나 기분이 나쁠 수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 C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행위는 물론 업무 지시 과정에서 이루어진 언동이라고 하더라도 그 방식과 표현 방법, 내용, 장소 등에 비추어볼 때 적정한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거나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다. (광주지법 2025.9.17. 2024가단558701 [미확정])

불인정 행위자가 2020.3.경 원고의 등 또는 엉덩이를 친 행위, 2020.6.경 원고의 어깨를 흔들거나 툭 친 행위에 대해 행위자는 직장 상사로서 같은 남자인 피해자를 격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별다른 의식 없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자의 행동이 피해자에게는 고통이나 괴롭힘을 주는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으나 위 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있었음에 관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행동만으로는 위에서 본 법리에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서울동부지법 2023.9.6. 2022나29558)

2.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

1 욕설/ 비속어 / 폭언

인정 회식 이후 대리기사가 있는 차 안에서 반복적인 고성과 욕설(이 정도 말했으면 전화를 해야되는거 아니냐, 그렇게 잘났냐 그렇게 잘났으면 니가 팀장해')

인정 피해자에게 2021.5월경부터 10월경까지 '어리버리하다, 머리가 안좋다, 토 달지 말고' 네 '라고만 하라, 나한테 찍히면 회사 생활을 오래 못한다, 너 점점 못해지냐, 들어왔을 때보다 못해지냐'는 등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춘천지법 2022가단37536)

불인정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상사의 폭언, 모욕적인 언행 등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이로 인해 상대방이 다소 기분이 상한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감내 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만한 행위이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한 경우에게까지 이르러야 할 것이며, 또한 그러한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상대방이 개별적인 기질 내지 특성 등으로 위와 같은 상황에 취약하다는 점을 가해자가 미리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 바, 원고 주장에 의하여도 피고B의 행위 중 원고에게 한 행위로는 원고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앞서 본 팀장회의에서의 것일 뿐인 점, 원고가 겪고 있는 정신과적인 증상은 환자의 성장환경 및 가정환경, 당초의 성격 등 기질성 요인, 직업적 적응 또는 대인 적응 정도,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 및 적절한 해소방법의 존부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할 수 있는 점, 원고에 대한 심리평가에 나타난 원고의 기질적인 특성, 원고의 기질적 특성이 피고 B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것인지, 당초부터 원고가 가지고 있던 것인지 불분명한 점, 피고B가 위와 같은 원고의 특성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피고B가 징계처분을 받은 구체적인 사유, 위 징계사유에 원고에 대한 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점 등 앞서 든 증거자료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 및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피고B가 원고에 대하여 폭언이나 언행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광주지법 2021.8.24. 2020가단506023)

2 협박

인정 장애인 근로자에게 '망치로 때려 죽이겠다, 출근하지 말라' 등 발언(서울행법 2024.8.22. 2023구합75478)

인정 개별 면담에서 충성을 강요하며 '나와 척지면 끝까지 괴롭힌다'는 협박성 발언(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12237)

3.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1 뒷담화

- 인정** ① 약 4년간 지속적으로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자는 일도 못하고 개념도 없다, 피해자가 성형수술, 양악수술을 하였다’는 취지의 발언
 ② 공개된 장소인 탕비실에서 ‘피해자는 일도 못하는데 임원들 홀리는 무언가가 있다, 속 깊은 자격증이 있는 애다, 맨날 점심 사먹던데 법인카드 쓰는거 아니냐, 내가 장담하는데 피해자는 돈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행위(서울남부지법 2020가단289488)

2 소문 배포

- 인정** 다른 부서 직원들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저 이상한 새□는 피곤하게 만드는 스타일이고 지위체계를 무시하고 자신에게 피해를 줘서 팀을 이동한 것’이라고 말하는 등 지속적인 험담, 악의적 소문 배포(서울북부지법 2025.9.12. 2024가단162195 [미확정])

- 인정** 메일 참조자를 다수로 하여 I팀 팀원을 대상으로 문제 제기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반복 발송한 행위(대전고법 2024.8.22. 2023나15101)

- 불인정** 개인의 역량과 나이를 고려하여 고객을 배정하겠다’는 취지의 발표를 한 후 영업사원의 연령에 관한 설명을 하기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나이를 물어보는 질문을 한 것(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63755)

4.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 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

1 모욕 - 공개적인 자리·공개적 방법으로 통지

- 인정** 행위자 본인에 관한 언론의 부정적 기사를 보고 이를 제보한 사람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여 대표이사실에서 본부장 등 간부들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조직파괴자, 처절하게 응징을 하여 근무를 못하게 하라, 조직원 속에서 이탈자가 있어서 감사를 받는 거야’라고 발언한 행위(대전지법 2020가합 105504)

- 인정** 직원들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나쁜애, 야비한 사람, 싸가지 없는 것들, 별 받는다, 이런 좋은 병원 다닐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고, 이후 피해자들이 너무 무식하여 신문을 읽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행위(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054715)



인정 외부 거래처 대표에게 피해자에 대해 '자르던지 바꾸던지 시간이 필요하다, 사람이 아니면 바꿔야 된다. 당장 바꿀 수는 없으니 조치가 늦다고 오해하지 말아 달라. 내가 뽑은 사람 아니다. 나는 뽑지 말라고 했는데 T매니저가 뽑았다. 어떤 부분인지 나도 안다. 내부적으로도 사람 짜증나게 한다'며 비방, 모욕하였고 이를 당시 피해자 및 다른 근로자가 듣게 한 행위(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69798)

불인정 행위자가 '부서회의 시간이니 조함원 고충 이야기는 다른 자리에서 하고 경비업무는 담당직원이 별도로 있으니 피해자는 남의 일에 신경쓰지 말고 담당업무나 하라, 다른 팀의 업무에 간섭하는 것을 월권이다'라며 피해자에게 발언한 행위(수원지법 안양지원 2023.3.8. 2021가단123961)

불인정 노동청 진정 후 팀장이 피해자에게 '외부에서 뭘 한다고 했다면? 하려던 거 해라.', '내가 왜 모든 걸 너한테 공유해야 되냐? 말꼬리 잡지 말고 하려던 거나 마저 해라'라는 말을 하였다 하여 그것 만으로 행위자와 피해자 간 누적된 갈등관계의 표출을 넘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모욕적인 언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남부지법 2022.3.11. 2020가단262704)

2 업무지적

인정 행위자가 2시간 가까이 같은 사안(업무 태도)를 지속적으로 지적한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며 사직을 강하게 종용한 행위(서울행법 2023.2.24. 2022구합70612)

인정 하청사(청소용역) 청소원에게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청소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고함(과도한 지적)(서울행법 2024.8.22. 2023구합75478)

불인정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너들 대학 나왔잖아, 근데 이것도 못하냐, 대학 나온 사람이 이 정도는 해야지'라며 발언한 행위는 다소 부적절하기는 하나, 일회성 발언으로 보이는 점, 사업개편 지시에 따라 팀장으로서 업무 수행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발언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하여 판단 (대전지법 2021.11.9. 2020구합105691)

불인정 다른 직원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너무 정시퇴근(칼퇴근)이 아니냐'며 지적한 행위는 직원들의 인수인계 등 업무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정시퇴근 이유로 1회 지적한 것과 이를 넘어 별다른 행동을 한 것은 아님(부산지법 2024.4.9. 2023가단301619)

5.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

1 업무성과 폄하 및 조롱

인정 업무 결과물을 ‘쓰레기’라고 폄하한 경고문을 단체 대화방에 게시(서울행법 2023.4.13. 2022구합56241)

불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내부 논의 거쳐서 최종 합의, 결정된 내용으로 소통해 달라.’, ‘리더들끼리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팀원은 곧바로 의견을 남기지 말고 리더인 피고에게 먼저 이야기한 후 댓글을 남겨 달라.’, ‘큰 틀에서 기조는 변함이 없으나, 인터뷰나 방송 출연 섭외 요청 건은 사소한 것도 공유해 달라.’, ‘섭외 건마다 그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내부 상황 및 매체에 따라 다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니, 담당자 선에서 판단하고 상황을 종료시키면 리더와 팀 단위에서 고민의 기회를 상실할 수 있으니 앞으로 공유해 달라.’라고 말하며 원고의 업무방식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는바, 원고가 회사의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였다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적절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팀장인 피고의 입장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이나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다 적절한 방식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를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것 자체만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 등의 모욕적인 언행을 사용하지도 않았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5.5.23. 2023가단84317, 2024가단87979)

6. 집단 따돌림

1 따돌림

인정 피해자의 후임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섞어 모멸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방치하거나 부추기고, 나아가 피해자를 조직 체계에서 배제하여 후임에게 업무 지시를 받도록 하였고 단독방에서 피해자와 다른 근로자들을 구분짓는 발언을 계속하고, 피해자를 이기적이고 분란을 초래한 사람인 것처럼 규정짓거나 암시하는 발언을 계속하였으며, 피해자를 배제한 비공식 단독방이 개설되도록 하여 원고를 동료들과의 사적 대화에서 배제(서울중앙지법 2023.11.28. 2022가단5252694)

불인정 피해자가 행위자들(팀장 및 팀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업무상 질의를 하면, 행위자들은 이를 거절하거나 회피하면서 도리어 피해자에게 기한 내에 업무를 빨리 처리하지 못한다면서 무시하였고 다른 팀원들이 실수하는 경우 이를 덮어주었던 반면, 피해자의 실수는 공문화하거나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주장하나, 업무상 행위자들에게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이를 거절한 것만으로 괴롭힘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무시’와 ‘조롱’ 등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가치 평가가 개입되어 있는 사안이기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피해자가 행위를 그와 같이 느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음(서울중앙지법 2023.10.10. 2022가단5140821)



7.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

1 업무 관련 정보·의사결정과정 배제 → 따돌림

인정 팀장회의 등 회의 참석을 특정인에게만 미통보(인천지법 2023.2.7. 2021가단227536)

인정 학과(직장) 내 공식 모임(교수회의, 학과 행사)에 특정인만 장기간 배제(대전지법 2025.4.24. 2023나223131)

인정 2024.1.4. 피해자에게 사직을 권고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면 팀장 발령하고 그 후속조치로 업무분장을 변경업무 및 결재라인, 업무메일에서 피해자를 배제(서울중앙지법 2025.6.26. 2024가단5081711)

인정 피해자를 총괄 업무에서 제외하고, 결재는 피해자를 거치지 말고 담당자, 팀장 순으로 진행하라고 지시(창원지법 밀양지원 2022가합10322)

인정 행위자는 셀(cell) 배치를 변경하면서 기존의 3개의 셀에서 하나를 더 추가하였는데 추가된 셀에는 나머지 셀들과는 달리 셀장 없이 셀원인 B만을 배치하고 실질적인 업무를 부여하지 않음. 행위자는 업무분장 조정 및 부서배치 변경에 따른 자리 배치를 새로 정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통지 없이 다른 팀원들과 달리 피해자만 혼자서 따로 앉도록 정함(서울중앙지법 2021. 10. 8. 2020가단5296577)

불인정 현장 근로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행위자가 시설팀 부서회의에서 피해자를 배제하는 통보를 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시설팀 부서회의 참석 자격, 피해자가 그동안 어떠한 지위와 근거에서 참석해 온 것인지 등에 대한 자료가 없어, 피해자가 시설팀 부서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 피해자의 업무 수행 권한을 박탈하는 것인지, 의무 있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인지, 원고 업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함(수원지법 안양지원 2023.3.8. 2021가단123961)

8.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

1 훈련(교육) 차별

인정 트렌드 설명회 참석 배제(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소속 직원 12명 중 원고만 제외하고 모두 참석)(서울중앙지법 2025.6.26. 2024가단5081711)

2 승진 차별/부당 인사 평가

불인정 행위자에게 인사평정의 재량권이 있는 이상 그 재량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인사평정을 최하로 부여하였더라도 그 평정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행사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인사평정을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서울중앙지법 2023.10.10. 2022가단5140821)

3 보상(임금, 연봉조정, 성과급 등) 차별

인정 D추진부의 본부장 G는 '원고가 D추진부 업무에 부합하지 않는 일을 하고, 부서원과 융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서 I 점수를 0점으로 평가하였는바,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인사고과 배점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다. 원고 외에도 D고과를 받은 직원들이 존재하나, 원고만 영업업무가 아닌 문서 전산화 업무를 담당한 까닭에 본인의 업무수행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직원을 통틀어 원고만 유일하게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25.1.14. 2023가단5375402)

4 (일상적 대우) 차별

인정 원고가 스스로의 자유로운 선택과 의사결정에 따라 잔업과 특근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여 그와 같은 업무배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 B이 2021. 12. 22. 원고에게 “넌 이제 끝이다. 너 일 힘들게 해서 내 보낼 거다. 버텨봐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후 그와 동일한 맥락에서 피고 B의 권한과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임의적인 업무배제라고 봄이 상당하다(소외 회사의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이 이 사건 징계처분 전까지 잔업 및 특근 참여자를 주도적으로 결정하여 왔던 사실이 인정된다.)(수원지법 2023.5.26. 2022가단546552)

불인정 피고가 수○○○로 발령난 첫날 원고가 다른 PA○○○와 함께 피고 B를 찾아가 인사하였음에도 대답을 하지 않고 원고를 잠시 쳐다보았다가 다른 PA○○○도 있지 않느냐고 말한 행위는, 원고와 다른 PA○○○가 인사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함께 인사를 하거나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다른 질문을 하였다는 것으로, 그 자체로 피고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부산지법 2024.4.9. 2023가단 301619)

불인정 피해자가 업무 수행등과 관련하여 발송한 검토요청(메일)을 행위자가 고의적으로 회피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원의 메일에 관하여도 답장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의도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12237)



9.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1 휴가 사용 방해

인정 이 사건 전보 직후 충격을 받은 원고가 2020. 1. 27.~28.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하였음에도, 간호과장 G은 사전에 연차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고, 원무과장 J는 원고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시말서를 요구하였으며, 이 사건 병원은 이를 이 사건 전보의 사유로 삼기까지 하였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병원 및 소속 직원들의 일련의 대응은 원고가 당일인 2020. 1. 27. 오전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의사를 일방적으로 전달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2023.11.24. 2021가합531057)

불인정 근로자A는 상급자인 이사 B가 연차유급휴가 사용 후 사용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면서 “정당한 권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면서 반박함. 이에 대해 B는 “계속 그러면 어떻게 일을 같이할 수 있겠느냐”고 이야기함 → A가 B와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관한 확인서 또는 증빙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1회 연쟁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B이사가 이 사건 회사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서울행정법원 2021. 9. 29. 2020구단79120)

2 각종 복지혜택 사용 방해

인정 원고는 과거에 안내직원들이 D와 휴게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불편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D이 안내직원들과 함께 지하 4층 휴게실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였고, 원고는 2022. 4. 26. C 3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지하 4층 휴게실 사용에 관한 회의’에서 D에게 “아까 분명히 서무님이 ‘나 그럼 거기 안 갈게요’ 그랬죠? 말씀 내뱉으셨으면 지키세요, 사람이. 예? 왜 자기가 그거 불이득 볼 것 같으니까 아닌 것 같으니까 또 해가지고, ‘우리 여자들끼리 협의할게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안 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제가 보안대장이”, “4층에 오지마시라는 거예요. 그 말한 대로. 안 오겠다면서요? 그럼 내, 내뱉은 대로 말씀을 지켜 주세요. 내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출까요, 그러면? 이랬다 저랬다 가”라는 취지로 발언하여, 고압적인 태도와 말투로 계속하여 지하 4층 휴게실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등 D은 원고의 언행으로 지하 4층 휴게실 사용을 포기하게 되었고, 이 사건 사업소 내에 마땅한 휴게 공간을 가질 수 없게 되는 피해를 보았다. (서울행정법원 2023. 11. 3. 2023구합54693)

불인정 피해자는 행위자가 현장 근로자들에게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실을 사용하지 말 것을 통보하여, 현장 근로자들은 띄약별이 내리쬐는 날이나 비가 오는 날에도 휴게실을 가지 못하고 밖에서 대기해야 하였다고 주장하나, 작업일지에 의하면 지시 내용에 ‘우천시

작업종료’, ‘33도 폭염주의보 발령 시 작업 중지’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근무시간 중 대기실 사용 금지’의 의미가 작업도구 준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휴식, 휴지기, 우천 등의 경우에도 대기실 출입을 금지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하고 위와 같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때에는 대기실 내 휴식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설정한 것이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고 보기 어려움(수원지법 안양지원 2023.3.8. 2021가단123961)

10.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 강요

1 부서 이동 강요

인정 2024.1.4. 피해자에게 사직을 권고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면 팀장으로 발령하고 그 후속조치로 업무분장을 변경한 행위(서울중앙지법 2025.6.26. 2024가단5081711)

인정 (건강상 이유로 워크숍을 참석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시말서 작성을 지시한 날) 피해자에 대하여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업무로 전보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정한 회사 인사규정 제30조에 반하여 근무지에서 11km 거리에 있는 본점으로 갑작스럽게 전보 지시(광주지법 2025.4.15. 2023가단552584)

불인정 전보조치로 출근거리가 30분가량 늘어났고, 2020.3월부터 12월까지 J지회 조합원 및 동료 근로자들과 단절된 채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인사로 인한 불이익(출퇴근 거리 30분 증가, 기존 동료들과의 단절)은 통상적인 전보조치를 받는 근로자들이 겪게 되는 변화를 고려할 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음(수원지법 안양지원 2023.3.8. 2021가단123961)

2 퇴사 강요

인정 피해자가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퇴직을 강요하고 ‘업무능력에 비해 연봉이 과도하게 책정되었다’며 연봉 삭감을 중용,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퇴직을 재차 강요(수원지법 2023.10.17. 2022가단557422)

인정 반복적인 퇴사 압박 및 수의사인 피해자를 진료업무에서 전적으로 배제하고 청소, 리셉션 근무 등을 지시(서울서부지법 2025.5.22. 2023나49964)

인정 회사 이사가 직접 혹은 인사팀장 등 다른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권고사직(희망퇴직) 의사가 있는지’ 묻거나 ‘이직을 알아보주겠다’고 말하는 등 약 두 달 사이에 10차례가 넘게

사직을 권고(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사직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계속)(서울중앙지법 2024.9.12. 2023가합59719)

인정 영양교사A가 조리사B를 상대로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이를 제출받고 퇴직을 강요하는 발언을 수차례 함. 아울러 봐 달라는 B에게 ‘무능력하게 일한다. 니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며 니 욕심만 채운다 그만둬 주는게 좋겠다. 너무 심하다. 이쯤에서 그만두라. 너 때문에 우리가 점검에 걸려야 하느냐’ 등의 말을 함(서울행정법원2024. 2. 29. 선고2023구합62427)

11.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

1 업무 비품 미제공

인정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모니터를 구형으로 지급하거나 책상 칸막이를 설치하지 못하게 한 행위(인천지법 2023.2.7. 2021가단227536)

12.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 흡연 / 회식 참여를 강요

1 강요 → 사직서 제출·퇴사·사적 심부름·업무·사적 만남 등 강요

인정 회사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직원과 말다툼을 하여 분위기를 좋지 않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공개사과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서로 보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같은 팀 사무직, 생산직 직원 약 130명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게 한 행위(춘천지법 2021가단37928)

인정 피해자에게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출자금 납부 및 회식 참석을 수차례 강요 (광주지법 2025.4.15. 2023가단552584)

인정 기혼 남성·상급자인 행위자가 미혼 여성·하급자인 피해자에게 3차례 이성으로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꽃 선물 등 8개월간 구애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 (수원지법 2023.2.9. 2022가합10067)

2 회식(음주) 강요

인정 회식에 불참하는 직원을 공개적으로 면박하거나 불참사유에 대해 발언하고 이에 대해 다른 직원들에게 ‘아래 직원이 어디서 1차만 하고 집에 가냐’, ‘내 돈으로 술 사 먹여봤자 소용없다’ 등의 부정적인 발언을 함 (대전지법 2024.4.17. 2022구합105893)

인정 회식에 안 오면 블랙리스트에 적는다는 등의 언급을 하며 회식 참석을 강권(수원지법 성남지원 2020.6.30. 2019가합400151)

13.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1 근로자 감시

인정 피해자 등 야간사감들의 책상을 CCTV 바로 앞으로 이동시키고, 야간 근무시간 동안 15분에 1번씩 담당하는 층의 순찰을 돌도록 지시하는 등 근무조건을 악화시켰다고 판단(서울중앙지법 2023.11.28. 2022가단5252694)

인정 글로벌 사업부 해외영업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A가 팀원들을 상대로 팀장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패널티를 주겠다고 위협성 발언을 하고, 2시간마다 업무일지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팀원의 노트북을 가져와 이메일 보낸 편지함의 모든 발송내역, 브라우저 검색기록을 전부 열람하고 노트북을 압수한 후 카탈로그나 보고 있으라고 지시(수원지법 안양지원2024. 2. 15. 선고2022가합100689)



참고 3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사례

* 아래 사례는 개별사건의 판단이므로 유사한 사례인 경우라도 구체적 사실관계 및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직장 내 괴롭힘 판단례 1

인정 사례

술자리, 시말서 강요

행위내용 및 사실관계

가해자인 선배가 후배인 피해자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반복하여 말한 사건. “술자리를 만들어라”, “아직도 낱자를 못 잡았느냐”, “사유서를 써와라”, “성과급의 30%는 선배를 접대하는 것이다” 등 반복적으로 술자리를 갖자는 발언을 하고 시말서, 사유서를 쓰게 한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판단

- ① 행위자: 선배 직원
- ② 피해자: 후배 직원
- ③ 행위장소: 사업장 내·외
- ④ 행위요건
 - ④-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 직장 내 입사 선·후배라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
 - ④-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 술자리를 마련하도록 강요하고, 불응하는 경우 시말서 등을 쓰게 하는 등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를 함
 - ④-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 피해자는 선배 직원의 이 같은 강요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함

➔ 종합적 판단 : 해당

직장 내 괴롭힘 판단례 1-1

불인정 사례

술자리, 시말서 강요

행위내용 및 사실관계

팀장이 팀원에게 외부 업무 관계자들과의 회식 자리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였고, 팀원이 불참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참석을 독려하여 결국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팀장은 해당 관계자들과의 회식 참석을 강요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음

직장 내 괴롭힘 판단

- ① 행위자: 팀장
- ② 피해자: 팀원
- ③ 행위장소: 사업장 내·외(회식 장소 포함)
- ④ 행위요건
 - ④-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 팀장이라는 직장 내 상위 지위에서 회식 참석을 권유한 것은 인정
 - ④-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 피해자 본인도 단체대화방에서 직전 외부 업무 관계자들과의 회식에 대해 부정적 평가로 일관하지 않았고, 해당 회식과 관련하여는 외부 관계자들과 일정을 적극적으로 조율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팀장이 참석을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④-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 피해자가 회식 참석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 점은 인정되나, 강제성 없는 업무상 권유에 그쳤으므로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종합적 판단 : 비해당

기타 참고사항

- 인정 사례(판단례 1)에서는 반복적으로 술자리 마련을 강요하고 불응 시 시말서를 쓰게 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으나, 본 사안에서는 ① 업무상 취지의 회식 참석 권유에 불과한 점, ② 모욕적 언행 없이 의견을 전달한 점, ③ 시말서 강요 등 후속 강압 행위가 없었던 점에서 결정적 차이가 있음



직장 내 괴롭힘 판단례 2

인정 사례

업무전환, 따돌림

행위내용 및 사실관계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 전에 담당하던 업무(창구 수신업무)가 아닌 창구 안내 및 총무 보조업무를 주고, 직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따돌림을 지시함.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만 참석한 회의에서 피해자를 내쫓기 위하여 따돌림을 할 것을 지시하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하였음. 이후 책상을 치우고 창구에 앉지 못하게 할 것을 지시, 그를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행위를 하여 피해자는 우울증을 앓았고, 결국 퇴사함

직장 내 괴롭힘 판단

- ① 행위자: 회사 임원(전무)
- ② 피해자: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
- ③ 행위장소: 사업장 내
- ④ 행위요건
 - ④-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 회사 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들에게 따돌림을 지시하는 등 행위를 함
 - ④-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에게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을 퇴출시킬 목적으로 보조업무를 부여하고 책상을 치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에 해당
 -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을 상대로 다른 직원들에게 따돌림을 지시하거나 직접 나서 책상을 치우거나 비하·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등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
 - ④-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을 앓았으며, 결국 퇴사함

➔ 종합적 판단 : 해당

기타 참고사항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으로 처벌 가능
 - * 실제 사안에서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받음

직장 내 괴롭힘 판단례 2-1

불인정 사례

업무전환, 따돌림

행위내용 및 사실관계

행위자가 회사 매출 감소에 따라 회사에서 사업부서를 책임지던 진정인에게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구조조정을 지시하였으나 따르지 않았음. 시간이 지나자 진정인 업무도 변경되었으며, 주간 회의에 참여하지 않게 하였고, 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사후에 공유하지 않는 등의 행위가 연속되어 따돌림을 당하였다고 주장함

직장 내 괴롭힘 판단

- ① 행위자: 대표이사
- ② 피해자: 팀장
- ③ 행위장소: 사업장 내외
- ④ 행위요건
 - ④-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 대표라는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함
 - ④-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 진정인이 담당하던 업무가 변경된 것은 회사의 경영상 사유(매출감소)로 인해 변경된 것이며, 주간 회의 및 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의 미공유도 진정인의 변경된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내용으로 행위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괴롭힘의 의도에서 업무 배제 및 따돌림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또한 진정인이 사유에 대해 회사에 문의시 해당 사유에 대해 안내하였던 상황을 살펴볼 때 업무 변경 및 배제가 따돌림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움
 - ④-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 진정인은 해당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종합적 판단 : 비해당

직장 내 괴롭힘 판단례 3

인정 사례

룸·사이드미러 없이 운전

행위내용 및 사실관계

회장이 운전기사에게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폭언·욕설**을 하고, 때로는 운전 중인 운전기사의 머리를 뒤에서 가격하며 마구 때리기도 함. **룸미러와 사이드미러를 접은 상태에서 운전**하도록 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운전업무를 함

직장 내 괴롭힘 판단

- ① 행위자: 회장
- ② 피해자: 고용된 운전기사
- ③ 행위장소: 운전기사가 업무 수행 중인 자동차 안
- ④ 행위요건
 - ④-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 회장이라는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함
 - ④-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 지속적인 폭언·욕설, 머리를 폭행하는 등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를 하였으며,
 - 룸미러와 사이드미러를 접은 상태에서 운전하도록 한 행위 역시 피해자가 안전하게 업무 수행하는 것을 방해한 것으로서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
 - ④-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 피해자는 머리를 폭행당한 것에 대한 신체적 고통 및 폭언·욕설, 비정상적인 방식의 운전업무 지시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당함

➔ **종합적 판단 : 해당**

기타 참고사항

- 근로기준법상 폭행으로도 처벌 가능하므로 이를 우선 적용

직장 내 괴롭힘 판단례 4

인정 사례

폭행 위협, 반복 인사 강요

행위내용 및 사실관계

회식자리에서 직장상사가 소주병을 거꾸로 쥐어 잡고 피해자를 가격하려고 위협하고, 고객들 앞에서 피해자의 목을 짓누르는 신체적 폭력을 가하기도 함. 또한 부장님과 다른 직장동료가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종이를 던지며 모욕을 주는 행위를 가하기도 하고, 차렷 자세로 인사를 반복적으로 시키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함

직장 내 괴롭힘 판단

- ① 행위자: 상사
- ② 피해자: 부하 직원
- ③ 행위장소: 회식 장소, 사업장 내
- ④ 행위요건
 - ④-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
 - ④-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 회식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소주병으로 가격을 하려고 위협, 목을 짓누르는 등의 폭행을 하여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를 함
 - 다른 임·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행위를 한 것도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
 - ④-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 폭행 피해로 인한 신체적 고통 및 모욕적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인정 가능

➔ 종합적 판단 : 해당



직장 내 괴롭힘 판단례 5

인정 사례

개인적 업무 강요

행위내용 및 사실관계

본래 업무에 더하여 **대표의 개인적인 일**까지 보며 운전기사, 수행비서 역할까지 하였고, 눈이 많이 온 날 맨손으로 **대표의 부인 자동차 눈 제거 작업**까지 시킴. 직원을 동원해 **대표 개인 발의 옥수수 수확과 판매**까지 시키지만, 회사 분위기가 워낙 보수적인 곳이라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할 수 없는 분위기임

직장 내 괴롭힘 판단

- ① 행위자: 회사 대표
- ② 피해자: 직원
- ③ 행위장소: 사업장 내·외
- ④ 행위요건
 - ④-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함
 - ④-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 대표의 개인적 용무에 동원시키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를 함
 - ④-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 피해자는 대표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해야 하는 등 근무환경이 악화됨

➔ 종합적 판단 : 해당

직장 내 괴롭힘 판단례 6

인정 사례

단순 업무 반복

행위내용 및 사실관계

구매부서 직원으로 입사하여 3개월 차 된 이모 씨는 평직원임. 구매과장은 근속연수가 3년 이상 된 차모 씨가 하고 있던 업무 중 일부를 이모 씨에게 인계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차모 씨는 구매 관련 정보 및 업무 진행과정 등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제품목록에 **라벨붙이기, 창고정리, 운전, 거래업체 심부름 등 단순 업무만 지시함**. 더불어, **특별한 이유 없는 장시간 근로 지시, 교육과정에서의 욕설 등 폭언**으로 인하여 괴로움 호소

직장 내 괴롭힘 판단

- ① 행위자: 입사 3년 차 선배사원
 - ② 피해자: 입사 3개월 차 신입사원
 - ③ 행위장소: 사업장 내
 - ④ 행위요건
 - ④-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 3년차 선배인 점, 실질적으로 지시를 하는 위치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 내용 등에 따라 지위의 우위가 인정될 여지도 있음
 - 인수인계 지시, 근속연수, 업무역량 등 관계상 우위는 명확히 인정
 - ④-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 〈행위1〉 신입사원 교육과정에서의 폭언
 - 신입직원이 입사할 때마다 6개월 정도 단순 반복성 업무를 시키면서 욕설·폭언을 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상당한 행위로 볼 수 없음
 - 〈행위2〉 단순작업, 조기출근, 연장근무 지시
 - 단순작업 지시, 조기출근 및 연장근로 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 업무상 필요성이나 당사자 합의 없이 조기출근, 연장근무를 시키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인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사회 통념상 상당한 것으로 볼 수도 없음
 - ④-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 능력을 발휘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단순 반복성 업무만 수행하고, 지속적인 폭언에 노출되고 있으므로 근로환경의 악화 인정 가능
- ➔ **종합적 판단 : 해당**
- 업무인계 없이 단순업무만 반복적으로 지시한 점, 폭언을 지속적으로 한 점, 당사자에게 설명 없이 조기출근, 연장근무 등을 지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



직장 내 괴롭힘 판단례 7

인정 사례

전공과 관련 없는 강의 배정

행위내용 및 사실관계

대학교수는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강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학문연구를 보다 발전시키는 것이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대학교수의 사용자인 학교법인이 그 업무지휘권 등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오로지 소속 **대학교수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 하에 그 의사에 반하여 **전공분야와 관련 없는 과목의 강의를 배정함**으로써 결국 강의할 수 없게 함(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직장 내 괴롭힘 판단

- ① 행위자: 학교법인(사용자)
- ② 피해자: 대학교수
- ③ 행위장소: 사업장 내
- ④ 행위요건
 - ④-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 사용자 지위를 이용하여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배정
 - ④-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 업무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확인되었고,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배정하여 대학교수라는 직업 본연의 인격권 실현을 방해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
 - ④-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 강의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 전공 관련 학문연구를 실현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무환경 악화가 확인

➔ 종합적 판단 : 해당

직장 내 괴롭힘 판단례 7-1

불인정 사례

근로계약서에 없는 업무 배정

행위내용 및 사실관계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생산 분야에서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늘어나 사무실 경리 직원에게 업무 지원 요청함. 경리 직원은 자신의 업무가 아님에도 업무를 지시하였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직장 내 괴롭힘 판단

- ① 행위자: 대표
 - ② 피해자: 경리 직원
 - ③ 행위장소: 사업장 내
 - ④ 행위요건
 - ④-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 피해자는 경리 직원이고 행위자는 대표로서 업무상 지위는 인정됨
 - ④-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 일회적으로 생산 업무 지원을 요청하였고, 업무 협조 지시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을 준 것은 없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하여 사회통념상 업무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움
 - ④-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 업무 협조 차원에서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움
- 종합적 판단 : 비해당
- 수회 반복적이거나 강제성이 수반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시한 것도 아니므로 일회 업무 지원 요청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움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기타 참고사항

-



행위내용 및 사실관계

팀장 B는 G팀 내 셀 배치를 변경하면서 기존의 A, B, C셀에서 D셀 하나를 더 추가하였는데 D셀에는 나머지 셀들과는 달리 셀장 없이 셀원인 피해자만을 배치하였다. 위 업무분장 조정 이후 피해자는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팀장 B는 위 업무분장 조정 및 부서배치 변경에 따른 자리배치를 새로 정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통지 없이 다른 팀원들과 달리 원고만 혼자서 따로 앉도록 정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 ① 행위자: 팀장
- ② 피해자: 팀원
- ③ 행위장소: 사업장 내
- ④ 행위요건
 - ④-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
 - ④-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 ① 업무분장 조정 당시 셀장 없이 원고 1명을 구성원으로 한 셀을 구성해야 할 업무상 긴절한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② 이러한 셀 구성은 기존 팀 구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팀장 B는 피해자가 셀장 및 다른 팀원들과의 마찰, 업무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업무분장 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자신의 담당 업무를 명백히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④ B는 이 사건 업무분장 조정 이전에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이례적인 인사배치에 관하여 설명하거나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한 바 없는 점, ⑤ 셀장이 배치되지 않은 피해자로서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새로운 업무를 배정받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업무를 배정받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④-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 팀장 B는 이 사건 업무분장 조정을 통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회사 업무 수행을 방해하였고, 팀장 B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 종합적 판단 : 해당

피해자가 팀장 B의 이러한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으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직장 내 괴롭힘 판단례 8-1

불인정 사례

업무분장 조정

행위내용 및 사실관계

행정실에서 근무하던 직원에게 행정실장이 업무분장을 하면서 기존에 담당하지 않던 인건비 추가경정 예산안 작성을 지시하고, 주요 행정실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변경한 뒤 피해자에게는 인채실 관리 업무를 배정하는 등 부당한 업무분장 변경으로 괴롭힘을 당함
(참고판례: 대구지방법원 2022.6.15. 선고 2021나314644)

직장 내 괴롭힘 판단

- ① 행위자: 행정실장
- ② 피해자: 행정실 직원
- ③ 행위장소: 사업장 내
- ④ 행위요건
 - ④-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 행정실장이라는 관리자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분장을 조정
 - ④-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 해당 업무분장에서 직원 3인 사이에 기존 업무가 상호 교환적으로 배정된 것으로, 피해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업무가 추가된 것이 아니며,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새 담당자가 적응하기까지 기존 담당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볼 수 있음
 - ④-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 업무 변경에 대한 불만은 있을 수 있으나, 상호 교환적 업무 배정으로서 특정인에 대한 업무 배제 의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무환경이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종합적 판단 : 비해당

기타 참고사항

- 인정 사례에서는 셀장 없이 1명만을 배치하고, 사전 설명 없이 실질적 업무를 부여하지 않으며, 혼자 따로 앉도록 한 행위가 문제되었으나, 본 사안에서는 ① 3인 사이의 상호 교환적 업무 재배치의 일환인 점, ② 업무인수인계의 통상적 과정인 점, ③ 업무 배제 의도가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결정적 차이가 있음.



행위내용 및 사실관계

외류회사 디자인팀장은 조만간 있을 하계 신상품 발표회를 앞두고, 소속 팀원에게 새로운 제품 디자인 보고를 지시함. 디자인 담당자가 수차례 시안을 보고하였으나, 팀장은 회사의 이번 시즌 신제품 콘셉트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완을 계속 요구하였고, 이로 인해 디자인 담당자는 업무량이 늘어났으며 스트레스를 받음

직장 내 괴롭힘 판단

- ① 행위자: 디자인 팀장
- ② 피해자: 디자인 담당자
- ③ 행위장소: 사업장 내
- ④ 행위요건
 - ④-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 직속 관리자라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
 - ④-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 신제품의 디자인 향상을 위해 부서원에 대해 업무 독려 및 평가, 지시 등을 수차례 실시하는 정도의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 그 양태가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다고도 보기 어려운 상황
 - ④-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 해당 근로자로서는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음

→ 종합적 판단 : 비해당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행위자인 팀장은 회사의 디자인을 총괄하는 담당자로서 새로운 제품 발표회를 앞두고 성과 향상을 위하여 부서원의 업무에 대해 독려 및 지시를 할 수 있는 업무상 권한이 존재하며,
 - 이를 수행하기 위해 다른 부적절한 행위를 한 바도 없으므로 일부 업무상 부서원이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직장 내 괴롭힘 판단례 10

인정 사례

업무평가 및 성과급 등급

행위내용 및 사실관계

2025년 3월 피해자는 인사발령메일을 받고 본인과 같은 직군임이에도 빠르게 진급한 타 현장 인원을 발견했고, 이에 행위자 및 인사팀 확인 결과 행위자가 피해자의 고과 점수를 낮게 주었고 그로 인해 진정인은 승진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승진하지 못함

직장 내 괴롭힘 판단

- ① 행위자: 현장소장
 - ② 피해자: 행정,서무 대리
 - ③ 행위장소: 사업장 내
 - ④ 행위요건
 - ④-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 근무고과 부여 권한이 있는 현장소장으로서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
 - ④-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 별도 이유 없이 단지 직무가 서무라는 이유로 인사고과 점수를 낮게 부여한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행위
 - 진정인은 서무업무를 담당하고 그 업무 내용은 현장 근로자의 인사업무 실무, 비품관리 등 총무업무 실무, 기타 현장 관련 행정처리 전반을 담당함
 - 행위자는 진정인에게 별도 사유 없이 진정인의 서무 업무에 대해 “단지 타부서의 서포트일 뿐이다”발언하고, 진급하고자 한다면 도면 작성 등 다른 직무를 병행하면 진급 품의에 대해 고민해보겠다 발언하였으며, 행위자가 지정하는 진급 품의의 결과로 진정인의 승진 누락이 확정됨
 - ④-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 낮은 고과점수 부여로 인한 승진 대상에서 누락
- ➔ 종합적 판단 : 해당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 행위자가 피해자의 직무인 ‘서무’업무가 정량화·수치화 되지 않아 제대로 평가를 하지 못했다고 인정한 점 및 승진 절차 및 규정등을 고려할 때, 단지 피해자가 맡은 직무를 이유로 다른 사유 없이 인사고과 점수를 낮게 주어 승진이 누락되게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봄이 상당함



직장 내 괴롭힘 판단례 10-1

불인정 사례

업무평가 등급

행위내용 및 사실관계

입사 10년 차의 영업소 매니저 김 씨는 입사 동기 중 유일하게 아직 영업소장으로 승진하지 못함. 다음 인사에서 승진하기 위해서는 이번 근무평정에서 A등급이 꼭 필요하나, 평정자인 본부장은 김 씨의 근무성적을 지난번에 이어 B등급으로 통보함. 김씨의 영업소장도 본부장 평가에서 B등급으로 통보받은 것으로 보아 영업소 실적이 다른 지점에 비해 떨어지는 건 사실로 보이지만, 승진을 앞둔 자신에 대한 상사의 배려를 기대했던 김 씨는 B등급이 나오자 본부장이 본인의 승진을 고의적으로 막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괴로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 ① 행위자: 본부장
- ② 피해자: 영업소 매니저
- ③ 행위장소: 사업장 내
- ④ 행위요건
 - ④-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 여부
 - 근무평정 권한이 있는 본부장으로서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
 - ④-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 영업소의 실적 부진에 대하여 영업소 관리책임이 있는 영업소장과 매니저에 대하여 최우수 등급(A등급)의 하위인 B등급을 부여한 것에 대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상당하지 않다고 볼 근거가 미약함
 - ④-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 근무평정 결과로 인하여 승진 대상에서 누락되어 정신적으로 괴로움

→ 종합적 판단 : 비해당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영업소 실적 부진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이유로 영업소의 관리책임자에 대하여 근무평정에서 상위등급 이하의 평정을 부과한 것은 평정자의 정당한 업무범위(권한)에 속하는 사항임
 - 성과우수자에 대한 평가 저하 등 불합리한 평가 또는 의도적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 입장에서 승진누락에 대한 괴로운 심정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는 없음

참고 4 「직장 내 성희롱」과의 비교



1.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 ▶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참고판례 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4702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2. 양 개념의 관계

- ▶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각각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을 규정한 만큼, 법상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은 문제된 성적 언동이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였으면 인정될 수 있고,
 - 또한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또는 사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사업주 미조치에 대해 과태료 제재가 가해지는 점을 고려할 때,
 - 성적 언동이 문제된 사안이라면 남녀고용평등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임

참고판례 대법원 2006.12.21. 선고 2005두13414

‘성희롱’을 정의한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 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되고, 어떠한 성적 언동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한편 직장 내 성희롱은 ‘성적인(sexual)’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언동을 수반하여야 하므로,
 - 여성비하 행동, 고정관념적 성역할 강요 등 이른바 ‘젠더(gender)’ 괴롭힘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는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될 수 있음
- ▶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모두 근로자의 인격권 침해 측면에서 유사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시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판례 입장 등을 적극적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임



사업장 내 해결절차의 통합적 운영 가능

- ▶ 문제되는 행위 발생 시 사업장 내에서 해결·처리하는 절차가 양 법률에서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 사업장 상황에 따라 사건 발생 시 처리절차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

참고 5 사업장 자체 조직문화 진단을 위한 근무환경 설문조사표

I. 귀하의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응답자 특성									
성별	☐ ① 남	☐ ② 여	연령대	☐ ① 20~30대	☐ ② 40~50대	☐ ③ 60대 이상	직무	☐ ① 정규직	☐ ② 비정규직

II. 회사의 근무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 그저 그렇다 ☐ 매우 그렇다						
1	우리 회사는 상사의 지시에 반드시 복종해야 하는 상명하복 분위기가 강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우리 회사는 인맥/학연/지연 등과 관련 없이 모두를 평등하게 대우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우리 회사는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평가를 잘 받는 공정한 평가 체계를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우리 회사는 명확한 업무 분담과 역할 분담이 이뤄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우리 회사는 직원의 자율성을 인정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우리 회사는 직원에게 많은 업무와 성과를 요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우리 회사는 회사 내부의 문제(예: 성희롱, 비리 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을 골칫거리로 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우리 회사는 직원의 자기계발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우리 회사는 근무 중 직원이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우리 회사는 최근 경영 관련한 변화로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예: 구조조정, 합병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우리 회사 내에는 어려움을 토로하거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잘 마련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우리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조의 활동이 잘 지원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Ⅲ. 다음은 최근 6개월 동안 직장 생활에서 발생한 경험의 빈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분		전혀 없음	6개월에 1-2회	월 1회 정도	주 1회 정도	매일
1	나의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했다.	①	②	③	④	⑤
2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을 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에게 힘들고, 모두가 꺼리는 업무를 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4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5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를 제외했다.	①	②	③	④	⑤
6	내 성과를 가로채거나, 성과 달성을 방해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에게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8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했다.(예: CCTV를 통한 감시)	①	②	③	④	⑤
9	사고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 나에게 주의사항이나 안전장비를 전달 해주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에게 상사의 관혼상제나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했다.(예: 개인 심부름 등)	①	②	③	④	⑤
11	나에게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했다.	①	②	③	④	⑤
12	누군가 사소한 일에 트집을 잡거나 시비를 걸었다.	①	②	③	④	⑤
13	누군가 내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렸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에게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했다.(예: 물건 던지기, 주먹질 등)	①	②	③	④	⑤
15	나에게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를 부적절하게 의심하거나, 누명을 씌웠다.	①	②	③	④	⑤
17	누군가 내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거나 망가뜨렸다.	①	②	③	④	⑤
18	다른 사람들 앞에서(또는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 흡연을 강요했다.	①	②	③	④	⑤
20	내 의사와 관계없이 회식 참여를 강요했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를 업무 외의 대화나 친목 모임에서 제외했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의 정당한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무시했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필요한 추가근무(야근, 주말출근 등)를 강요했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에게 부당한 징계를 주었다.(반성문, 처벌 등)	①	②	③	④	⑤
25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 또는 행동을 나에게 했다. (이메일, 전화, 성적 농담, 성추행)	①	②	③	④	⑤

참고 6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표준안

- 취업규칙은 사내 규범이므로 사업장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정
- 이 자료는 배포 당시 시행되고 있는 노동관계법령을 반영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법령 제·개정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에서 제·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그 기준에 맞게 취업규칙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이 자료에 기재된 필수 근로조건은 관계 법령에 따른 ‘최저기준’을 반영한 것이므로, 사업장 상황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이상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1 기존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규정을 추가하는 경우

제○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예방

제○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사용자, 사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주체는 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직원이지만, 그 대상은 협력사 직원으로 통칭되는 파견근로자 또는 하청근로자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취업규칙 내용이 사업장 전반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

〈예시문〉

제○조(원·하청 및 협력사 사원 등에 대한 보호) 사용자, 사원으로부터 괴롭힘 피해를 입은 원·하청 및 협력사 사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회사에 괴롭힘 행위를 신고하고,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회사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사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거나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사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참고】 표준안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행위 중심으로 최소한의 예시를 규정
→ 매뉴얼 본문에 있는 행위 예시, 체크리스트, 사례 등을 참고하여 각 사업장별로 금지가 필요한 행위를 추가할 수 있음.

회사 차원에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행위는 표준안에서는 일단 제외하였으나, 법령 위반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제10호를 적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임

제○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노동자의 인격권 침해를 예방하고 문제행위 발생시 사업장에서 해결·처리하는 절차가 유사한 성희롱 법정교육시 괴롭힘 예방교육도 포함하여 통합교육 방식을 활용하여 예방교육의 효과성을 높인다.

② 사용자, 사원은 제1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상담절차
4.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 금지
8.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관련 비밀 누설 금지
9.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항상 게시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 ① 회사 내 인사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사원(이하 “예방·대응 담당자”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② 회사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부서) 직원에 대해서는 예방 및 대응 교육 등 실시하여야 한다. 회사는 해당직원의 상담방법 및 조사기법 등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조 (사건의 접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또는 예방·대응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 또는 예방·대응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접수한다.

【참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신고 방법*, 조사에 관한 사항, 행위자 및 피해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불리한 처우 및 비밀누설 금지의무 등)은 필수기재 사항임
* 괴롭힘 신고 접수 담당(부서) 등 신고 방법 등 관한 사항은 필수기재 사항임

제○조 (사건의 조사) ①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② 조사는 사용자 또는 예방·대응 담당자가 담당한다.

③ 조사가 종료되면 사용자에게 보고하며, 사건 당사자 등에게 사건 처리 결과와 내용, 판단 근거를 통지한다.

④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조 (피해직원등의 보호) ① 회사는 조사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사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원(이하 “피해직원등”이라 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직원등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직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① 회사가 사건을 종결한 경우에는 조사 결과와 내용, 판단 근거를 신고인 등 에게도 통지한다. ②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직원등의 의견을 듣는다.

제○조 (징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0. 생략

00.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

000.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참고】 기존에 있는 징계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하여 사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직원에 대한 징계 근거를 마련

제○조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조치) ① 회사는 고객응대사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게시하거나 음성으로 안내하고,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과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사원이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사원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 또는 전환하거나 휴게시간을 연장,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폭언등으로 인한 고소 및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조치 등을 한다.

③ 사원은 회사에게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조

② 별도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 취업규칙으로 간단하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규율하는 방법 이외에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규율할 수 있으며, 사업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 내용을 수정하여 제정할 수 있음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예방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규정을 통합,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아래 표준안의 절차규정 등은 본 매뉴얼의 내용을 토대로 한 것임

제1조 (목적) 회사는 직장 내에서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는 등의 노사가 상호존중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시행한다.

제2조 (회사의 책무)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사용자 또는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 ① 회사 내 인사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사원(이하 “예방·대응 담당자”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② 회사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부서) 직원에 대해서는 예방 및 대응 교육 등 실시하여야 한다. 회사는 해당직원의 상담방법 및 조사기법 등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원) ① 회사는 제9조에 따른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둔다. 이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고충상담원이 있는 경우 그를 상담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상담원은 성비(性比)를 고려하여 남성과 여성을 고루 배치하며, 직원들 사이에 신망이 높은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관한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보고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노동자의 인격권 침해를 예방하고 문제행위 발생시 사업장에서 해결·처리하는 절차가 유사한 성희롱 법정교육시 괴롭힘 예방교육도 포함하여 통합교육 방식을 활용하여 예방교육의 효과성을 높인다.

② 사용자, 직원은 제1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상담절차
4.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 금지
8.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관련 비밀 누설 금지
9.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절차)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사건의 접수



2. 상담을 통한 피해자의 의사 확인
3. 피해자의 의사에 기초한 당사자 간 해결 또는 정식 조사의 실시
4. 정식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의 확인
5.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결정

제8조 (사건의 접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또는 예방·대응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 또는 예방·대응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접수한다.

제9조 (상담) ① 제8조에 따라 사건이 접수된 경우 상담원은 지체 없이 신고인과 상담한다.

- ② 신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상담원은 신고인을 먼저 상담한 후 피해자를 상담한다.
- ③ 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구제방법 및 회사 내 처리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자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희망하는 처리방향에 대하여 청취한다.
- ④ 상담원은 상담을 종료하면 그 결과를 예방·대응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상담원은 상담 시 신고인 또는 피해자 등에게도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당사자 간 해결) ① 상담원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고, 행위 중단·분리·재발방지·사과 등을 통한 해결을 희망하는 경우, 피해자가 그 행위의 중단을 위하여 행위자와 분리 또는 재발 방지 및 사과만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예방·대응 담당자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보고하여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

- ② 상담원은 피해자가 행위자의 괴롭힘 행위 중단 및 사과 등 직접적인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해자가 추천한 참고인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행위자에게 피해자 요구 사항을 전달하여 합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합의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 사건을 종결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담원은 피해자의 정식 조사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조치한다.

제11조 (정식 조사) ① 회사는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정식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제13조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 ②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사건의 경우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조사·보고·결재 과정에서 행위자인 사용자는 배제하여 조사한다.
- ③ 조사위원회는 조사가 개시된 날부터 0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0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보고하고 인사위원회로

보고서를 이관한다.

⑤ 조사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조사보고서 작성 시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조사위원회와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비밀유지 서약을 하여야 하며, 조사 내용 및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조사위원회) 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포함하여 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조사위원은 특정 당사자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 한다. 이 경우 조사의 전문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표가 임명하는 사람이거나 호선 방식 등 위원회 총괄 및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가능한 사람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회사의 감사 등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감사 등은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⑤ 조사위원회 위원 중 괴롭힘 행위자가 포함되어 있는 등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특정위원을 기피신청하거나, 해당위원이 회피할 수 있다.

[참고 1] 대표이사가 행위자인 경우 조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감사가 조사를 실시하는 주체로 규정

[참고 2] 제5항의 조사위원회 공정절차 운영을 위해 피신고인의 경우도 기피신청권 규정 가능

제13조 (조사기간 중 피해자등 보호) 회사는 제12조에 따른 조사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등의 요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제14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① 제11조제4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가 이관되면 취업규칙 제00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인사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 양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③ 대표이사가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감사는 지체 없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하고 소집된 이사회에 출석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시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내용을 보고한다.

④ 이사회는 감사의 보고를 받으면 대표이사에 대한 조치를 의결한다. 다만, 인사위원회에서 통지한 대표이사에 대한 조치가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인 경우 지체 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참고】 대표이사가 행위자인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등 조치를 결정하여 집행할 수는 없는 만큼, 상법을 참고하여 사업장 상황에 맞게 규정함

* 위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상법 제4장 주식회사 부분의 규정을 참고하여 규정한 예임

제15조 (사건의 종결) ① 회사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행위자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조치 권한이 있는 이사회 등에서 당사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종결한 경우에는 조사 결과와 내용, 판단 근거를 신고인에게도 통지한다.

③ 인사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노력 한다.

제16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① 회사는 제16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②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③ 회사는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④ 회사는 사건이 종결된 때부터 0년 간 △기간 별로 해당 사건의 행위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재발 여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모니터링하고 피해자를 지원한다.

【참고】 「사용자, 직원으로부터 괴롭힘 피해를 입은 원·하청 및 협력사 직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회사에 괴롭힘 행위를 신고하고,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등의 원·하청 및 협력사 직원 등에 대한 보호 규정도 필요에 따라 규정할 수 있을 것임

제17조 (징계) ①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제00조에 따른 징계사유 등에 따르되, 회사가 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징계 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신고자 또는 사건 관련 진술자 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제18조 (재발방지조치 등) ① 회사는 사건이 종결하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치를 한다.

②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받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 책을 만든 사람들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		현장 전문가	
근로기준정책관	서명석	노동변호사	김은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최홍기
근로기준정책과장	송유나	노동감독관	문준학	노무법인 해담 공인노무사	김성호
행정사무관	오정택	노동감독관	황은채	노무법인 시선 공인노무사	김승현
주무관	강무호	노동감독관	김상섭	(유)율촌 변호사	조상욱
		노동감독관	백우림	(유)세종 변호사	이세리
발 행 일	2026년 7월	노동감독관	배준이		
		노동감독관	박현중		
발 행 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디 자 인					

※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고용노동부의 동의 없이는 무단으로 발췌 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